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표준소득률과 기장세액공제가 신고납부에 미치는 효과
-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
- 자산유동화 개요

정책토론포트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편방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의 조세(II)

정책드림

1999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외

C O N T E N T S

권두칼럼	2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 孫光洛
현안분석	6	표준소득률과 가장세액공제가 신고납부에 미치는 효과 / 鞠重鎬
	18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 / 金珍洙
	33	자산유동화 개요 / 李相燮
정책토론포트	57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편방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83	일본의 조세(Ⅱ) / 申基鎭
경제단상	90	멋진 신세계 - Cyber Space - / 金泰孝
	92	두터움, 치밀함 그리고 독특함…… / 吳世珍
문화기행	95	서원을 찾아서: 도를 통해 이를 지민 하서 김인후선생을 배향한 필암서원 / 李 濬
정책흐름	100	1999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05	199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113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안)
	119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121	공공부문 재정규모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25	공평과세 이뤄져야 한다 외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孫 光 洛 / 영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필자는 1984년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4년에 10년간의 서울생활을 마감하고 대구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의 교통체증, 자연과 유리된 도시생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부대낌 등이 싫었으며, 고향 근처에서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옮길 때 집사람과 부모님 그리고 처가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서울에 있어야 출세의 기회가 있지, 지방으로 가면 그런 기회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곳에 내려와서 놀란 것은 서울은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는데 비해, 대구는 그리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둘러본 대구시내에는 큰 빌딩이 들어선 것도 없어서 옛날 모습 그대로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동안 대구지역에서 성장한 몇몇 대기업들이 오히려 본사를 서울로 옮겨갔으며, 포항제철도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곳에 내려와서 그래도 예전에 서울에 조금 있었다는 인연으로 하여 중앙부처의 몇몇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서울사람이고 지방사람은 거의 없어서,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방 실정이 고려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방송에서는 한강물이 2급수 이하로 떨어지면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부각이 되는데, 막상 낙동강물은 3급수로 된 지가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문제삼은 적이 없다.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어 전 국민이 크게 애도를 표하였으나, 그보다 사상자가 훨씬 많은 대구 상인동의 지하철 폭발사건은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

서울의 문제는 작은 것이라도 언제나 전국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반면, 지방의 문제는 큰 것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문제로 취급되지 못하였다.

대학교수로서 각종 학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학회는 대부분 서울에서 개최되며 어쩌다 지방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서울에 사는 교수님들에게 숙박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서울에서 개최하는 학회에 지방대학 교수들이 참석할 경우 그들에게 숙박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에 살다가 내가 있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동료 교수는 부인에게 대구로 이사하자고 했다가, 이혼을 했으면 했지 시골로 이사는 못가겠다고 하더라.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가면, 마치 자기가 인생에서 낙오자가 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은 듯 하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지방에서 교수를 하는 사람 중에는 나중에 자기 가족 모두를 서울에 보내고, 혼자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놓고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성장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과 산업이 서울에 집중되면 서울과 지방이 다같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서울은 과밀화와 공해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와 자금의 유출로 피폐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이 저하된다.

서울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서울과 지방간에 발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영호남간의 발전 격차를 문제삼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인데, 단언하건대 발전 격차는 영호남간에는 없으며 서울과 지방간에만 존재한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성장 초기단계에서는 서울 중심의 경제개발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장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과 산업이 서울에 집중되면 서울과 지방이 다같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서울은 과밀화와 공해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와 자금의 유출로 피폐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이 저하된다.

서울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사람도 자연히 분산되겠지만, 제반 산업여건은 그대로 두고 이러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 경제적인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사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며, 사람이 분산되어 있다보면 산업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으로 분산되게 된다.

사람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면 먼저 서울에 살지 않아도 장관이나 정부관련 단체의 기관장 등에 임명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에 내려간 사람에 대하여는 임명직 공무원의 임명이나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의 추천에서까지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 등의 유명인사가 퇴임 후에도 한사코 지방으로 내려 가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등용되기를 바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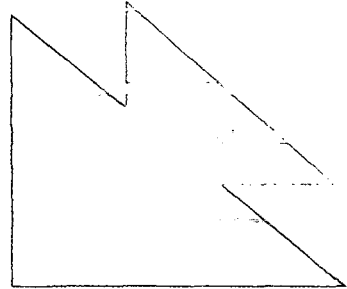
다음으로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명 대학교들의 서울 집중이 매우 심하고, 그로 인하여 서울로 인구집중이 초래되기도 한다. 현재 국

회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인재 지역할당제'가 입법화되는 경우 국가시험에의 합격을 선망하는 요즈음의 풍토에서 인재 분산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국가시험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입사시험에 있어서 지역의 인재가 고루 등용될 수 있도록 '인재 지역할당제'는 시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의 지방분산이 촉진될 것이고, 그에 따른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완화될 것이다. 외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굳이 유명 교육기관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서울에 있는 산업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지방에 있는 산업을 서울로 쫓아내는 그러한 분위기는 적어도 없어져야 한다. 지방기업이 서울로 기업의 본사를 옮기지 않고 지방에서 기업을 하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야 한다. 지방에 남아 있는 큰 기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들이 찬조금을 바라는 일이 없어야 하며, 지방의 기업들이 서울의 기업들에 비해 공무원들로부터 규제를 더 많이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방에는 왜 그러도 관공서와 공무원들이 많은가? 대구·경북 전체의 국세 징수액은 서울지역 큰 세무서 하나에서 징수하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다. 그러나 대구·경북 전체의 세무서 공무원 수는 그 세무서의 공무원 수보다 10배는 더 많을 것이다.

지방에서 살더라도 출세의 기회가 서울사람 못지않게 보장되고, 지방에서 대학교를 나오더라도 국가시험이나 대기업의 입사시험에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 못지않게 합격할 수 있고, 지방에서 기업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기업하는 경우보다 공무원들로부터 규제를 더 받지 않을 때, 서울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이 제고될 것이다. **김기**

현안분석



1. 표준소득률과 기장세액공제가 신고납부에 미치는 효과

鞠重鎬 /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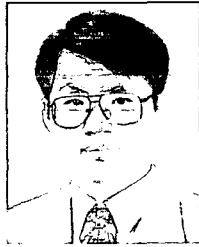
2.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

金珍洙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3. 자산유동화 개요

李相燮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표준소득률과 기장세액공제가 신고납부에 미치는 효과



韓重鎬 /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 교수

※ 필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었음.

기장세액공제나
간편장부제도의 실시는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이
그 동안의 제재 위주의
조세행정에서 성실히
장부를 기장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문제의 제기

주지하듯이 선진 세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도 정확한 기장에 기초를 둔 근거과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에 의해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하면 소득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소득세법 제56조 제2항)¹⁾. 나아가 1999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납세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²⁾. 이러한 제도의 실시가 과연 얼마만큼 기장에 따른 근거과세를 정착시키고 세수를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현재 판단하기 어려우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성실한 기장제도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면 바람직한 세정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장세액공제나 간편장부제도는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이 그 동안의 제재 위주의 조세행정에서 성실히 장부를 기장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장세액공제 제도는 1995년에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부활된 것이지만 이렇게 부침을 겪은 원인 중의 하나는 아마도 표준소득률제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무기장에 따른 표준소득률이 적용되어 추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성실한 신고

1)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 정보』, 1998. 12.
2) 『매일경제신문』, 1999. 2. 4.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납부의 경우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납세자는 무기장 추계과세를 적용받는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장세액공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번에 다시 실시하게 될 기장세액공제제도 역시 개인의 여건을 고려하기 어려운 표준소득률이 무분별하게 계속 적용이 된다면 이 제도가 또다시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기장세액공제나 간편장부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납세자는 이들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무기장에 따라 추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의 납세액을 고려하여 보다 적은 세액을 납부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³⁾. 그렇다면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는 무기장 추계과세와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장신고의 경우, 이들 제도가 신고납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본고의 문제 제기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으로서 본고에서는 기장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방식의 제도가 기장신고납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과 현재와 같은 표준소득률제도가 기장신고납부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을 보면 우선 제2절에서 우리나라의 기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제3절에서는 표준소득률제도와 장부기장에 대해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납세자가 무기장 추계과세와 기장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장세액공제와 표준소득률제도가 신고납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제5절은 맺음말이다.

II. 기장 현황

우리나라는 1996년도 신고분(1995년도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방법을 정부 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신고납부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⁴⁾. 그러나 우리는 무기장 신고인 경우에 정부에서 정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세액을 추계하여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과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수는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60% 이상의 사업자는 기장 없이 신고하고 있다. 예컨대 1997년 기장에 기초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인원은 39.6%이고, 나머지 60.4%는 추계신고에 의하고 있다. 이처럼 추계신고에 의하여 세금을

**기장세액공제제도는
1995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었는데
이렇게 부침을 겪은
원인 중의 하나를
표준소득률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물론 기장에 따른 세액공제 이외에도 기장 또는 성실신고에 따른 다른 혜택 또는 특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기장세액공제제도를 성실 기장에 대한 대표적인 제도로 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4) 1977년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1980년부터 법인세를 신고납부제도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대부분의 세목에서도 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자의
기장능력이나 기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여
소규모사업자의 무기장에
따른 추계신고는 주로
표준소득률이라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납부하고 있는 인원이 10명 중에 6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자진신고납세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1〉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황

(단위: 천명, 십억원, %)

	1996				1997			
	신고인원		결정세액		신고인원		결정세액	
	인원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461	37.6	2,560	75.4	505	39.6	2,771	75.1
추 계 신 고	765	62.4	836	24.6	770	60.4	919	24.9
합 계	1,225	100	3,396	100	1,274	100	3,690	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7, 1998.

한편 〈표 1〉에서 결정세액의 규모를 보면(1997년) 결정세액의 4분의
3(75.1%)은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에 의해 사업소득납세자가 지불하고 있으
며, 나머지 4분의 1은 무기장 신고에 따른 추계과세에 의해 납세하고 있다. 이것
은 물론 대규모사업자보다는 소규모사업자의 기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달리 말하면 소규모사업자의 기장능력이나 기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때 소
규모사업자의 무기장에 따른 추계신고는 주로 표준소득률이라는 정부가 정한 소
득추계 기준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표준소득률을 사업실적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추계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비
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표준소득률은 무기장에 따른 추계과세 적용시
에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후술하듯이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실신고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III.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장제도

1. 표준소득률제도

표준소득률이라 함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 및 법인세법(제32

5) 그러나 실제의 소득이 제
대로 파악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규모사업자인
지 대규모사업자인지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
은 쉽지 않다고 할 것이
다.

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⁶⁾. 이 표준소득률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편으로서 1955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소득세율을 결정짓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⁷⁾. 표준소득률은 일반사업자율(일반율)과 자가사업자율(자가율) 및 수입금액으로 구분되고 기본율과 차등률을 적용하고 있다⁸⁾. 차등률은 해당 종목의 기본율에 적용하여 계산되며 경감률과 가산율이 있다. 경감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외화획득사업자, 장기계속사업자, 장애자이고 그 경감률은 보통 20%(기본율의 80%)가 적용된다. 가산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대상자로 되어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각 규모에 따라 가산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대상자는 수입금액(매출과표) 신고수준이 특히 부진한 업소로서 높은 유통마진 등에 의해 실제 실현된 소득률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치성 고가물품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이며 가산율은 20%(당해 업소 적용종목 기본율의 120%를 적용)를 적용하고 있다⁹⁾.

정부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 1991. 9. 9) 체계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의 업종분류 규정과 허가사업 업종(예, 건설, 위생, 운수, 주류 등), 종목이 다양한 제조업의 추가세분 및 회귀업종의 통폐합, 상업무조상 가중치가 큰 종목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다¹⁰⁾.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부과되고 있다. 이때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포함되고 여기에 필요경비를 감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가운데에서 표준소득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산림소득과 종합소득 중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4개 항목이다. 이때 표준소득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령상의 총수입금액과 법인세법령상의 사업수입금액이 된다.

한편 표준소득률이 무기장 신고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추계하는 데 운용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외에 기장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즉, 납세자 자신이 장부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것이 일정기준에 이르러야 진실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그 일정기준에 대한 판

한편 표준소득률이 무기장 신고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추계하는 데 운용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외에 기장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6) 한국세정신문사,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

7) 장춘(1989)에서는 표준소득률제도(장춘의 논문에서는 소득표준율이라고 있다)에 대하여 그 성격과 내용, 결정과정 및 운용실태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장춘, 「국세행정기준율제도의 운용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소득표준율제도의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를 참고바람.

8) 법인의 경우에도 가장하지 않게 되면 표준소득률이 적용된다.

9) 자세한 것은 한국세정신문사,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참고바람.

10) 표준소득률상의 업종 분류는 업태를 분류하는 대분류(영문 1자리),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4단계로 구간으로 하고 있으나 코드번호는 적용성 증대와 세원관리 등을 위해 6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11)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금액이 일정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영업상황을 조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기장신고자의 경우 서면신고결정, 확정신고결정, 실시조사결정을 하게 된다. ① 서면신고결정의 경우, 기장에 따른 신고내용을 서면심리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신고소득률이 정부가 정한 전년 결정률 이상이어야 함과 동시에 당해 업종 신고기준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 신고기준율이 표준소득률의 일정 수준으로 되어 있다. 이때 신고결정을 받으려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확정신고결정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실시조사나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의 신고시 신고소득기준율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 신고소득기준율이 표준소득률의 일정수준으로 되어 있다. ③ 실시조사결정은 업종 현황이나 거래처 등의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신고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12) 『매일경제신문』, 1999년 2월 4일자 22면, 『한국경제신문』, 1999년 2월 4일자 3면.

정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다¹¹⁾. 이렇게 신고소득에 대해서도 표준소득률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나아가 소득(또는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납세자나 과세당국이 자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장부기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표준소득률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또는 거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기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성실하게 자진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세를 하게 된다면 표준소득률 적용에 따른 추계과세제도는 전혀 필요가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게 되는 조세의 특성상 납세자로서는 가능하면 적은 세금을 내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소득을 숨기려 할 것이며 과세당국은 보다 많은 세원을 포착하여 더 많은 세 수입을 거두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일이 세무조사를 하여 적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표준소득률제도를 적용하여 징세행정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징세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장에 따른 기회비용 등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이 들게 된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실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장세액공제나 간편장부제도는 바로 납세협력비용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장부기장과 세액공제

정부는 2000년에 장부를 통해 그 동안 사업 현황을 밝히면서 1999년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는 앞으로 3년 동안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¹²⁾. 현재 우리나라는 확정신고사업자의 68.2%, 전체 개인사업자의 88.2%가 장부신고를 하지 않고 종전 신고소득금액을 고려해 대충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기장문화를 정착시켜 근거과세의 원칙을 세워 나가고자

하는 데 있다. 간편기장제도는 성실히 장부를 기장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주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 준다고 하는 면에서 조세행정의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장하는 내용이 거래내용, 거래처, 거래일자, 매출액, 매입액, 고정자산매매, 비용(원가관련 매입 포함)의 7가지로 간단하게 장부기장이 끝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간편장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도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표 2>이다.

<표 2> 간편장부 대상자

구 분	간편장부 대상자
도매업·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축산업, 부동산매매업, 산림소득	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만원 미만

자료: 『매일경제신문』, 1999년 2월 4일자 22면; 『한국경제신문』, 1999년 2월 4일자 3면.

간편장부기장시 혜택으로서는 첫째, 종합소득세의 10%(100만원 한도) 공제 둘째,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셋째, 장부 작성자가 연간 수입금액을 '국세청 고시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향후 3년간 세금 경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간편장부 미기장시 불이익으로서는 세금의 10%만큼 가산세가 부과(결국 간편장부기장자에 비하여 세금을 20% 더 내게 됨)되며, 나아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장부기장 여부에 따른 세금혜택이나 불이행시의 제재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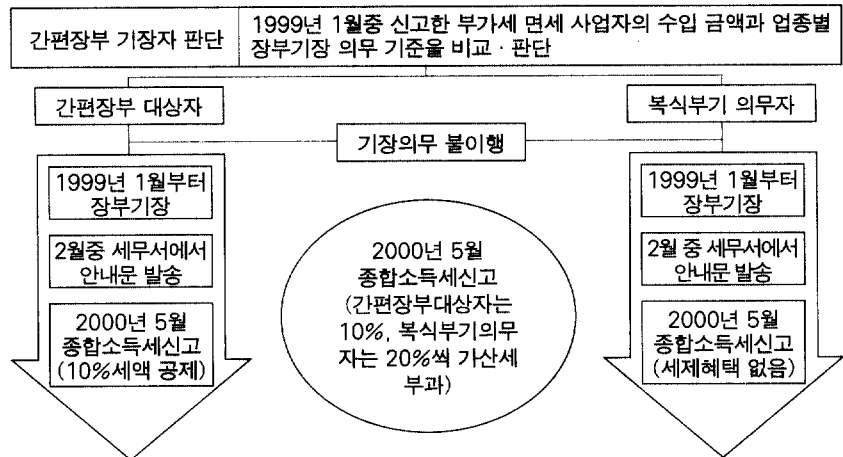
물론 간편장부제도의 도입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납부에 따른 혜택이나 불성실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혜택으로서는 소득공제(5인 가족 기준, 500만원)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또는 부가가치세) 경감제도¹³⁾ 등이 있다. 이에 반해 무신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불이익으로서는 첫째, 세액공제와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둘째, 수입금액

기장하는 내용이
거래내용, 거래처,
거래일자, 매출액, 매입액,
고정자산매매, 비용
(원가관련 매입 포함)의
7가지로 간단하게
장부기장이 끝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간편장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3) 경감내용으로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출 증가분의 해당세금을 1999년에는 100%, 2000년에는 50% 그리고 2001년에는 20% 등 차등경감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1998년 세제개편안).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기장을
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따라 무기장 추계과세를
적용 받아 납세를 하는
경우의 세액과
기장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여
낮은 경우를 선택할 것이다.

〈그림 1〉 장부기장에 따른 세금혜택 흐름도



자료: 『매일경제신문』, 1999년 2월 4일자 22면을 참조하여 작성.

에 비례한 높은 율의 차등과세가 적용되며 셋째,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넷째,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¹⁴⁾.

IV. 신고납부에 미치는 효과

1. 납세자의 선택

비록 우리나라가 신고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추계과세는 정부가 정한 소득표준율을 직접적으로 적용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부부과결정제도가 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는 본래의 신고납부제도와 무기장에 의한 정부부과결정제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표준소득률제도가 평균적인 추계과세이기 때문에,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과세를 통하여 납부하게 되는 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¹⁵⁾.

이것은 납세자가 기장을 하여 신고납세를 할지, 기장을 하지 않고 정부부과결정세액에 따라 납세를 할지 선택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기장을 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따라 무기장 추계과세를 적용받아 납세를 하는 경우의 세액¹⁶⁾ 과 기장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의

1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관 뒤의 <부표> 참조). 가산세에 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손광락,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한국조세연구원, 1997. 8을 참조 바람.

15) 직접적으로 납세자 자신이 추계과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가 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과세시 납세액에는 세무대리비용도 고려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6) 이때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포함한 세액을 감안할 것이다.

세액을 비교하여 낮은 경우를 선택할 것이다¹⁷⁾. 만약에 자신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금액이 정부부과결정세액보다 작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장을 하지 않게 되는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표준소득률에 따른 정부부과결정제도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행동을 보고 신고납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측면에서 신고납부제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준소득률이 비록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5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각 구간마다 차등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율이라고 하는 해당업종의 평균소득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각 개인이나 법인의 실제소득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는 개인이나 법인은 가능한 한 수입금액(또는 매출액)을 적게 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이처럼 표준소득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절세'를 하려는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절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표준소득률로 인해 정확한 기장을 하지 않게 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합법적인 탈세'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때 수입금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표준소득률이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 합법적인 탈세의 큰 유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치를 네거티브(negative) 징세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네거티브는 납세자를 성실기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유도 또는 수입금액의 축소라는 정직하지 못한 곳으로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비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기장세액공제제도도 성실기장과 납세의식의 함양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표준소득률에 따른 정부부과결정제도와는 그 방향이 다른 포지티브(positive) 징세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표준소득률제도에 따른 정부부과결정제도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기장신고납부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제 이들 두 제도가 신고납부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와 같은
표준소득률에 따른
정부부과결정제도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행동을 보고 신고납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신고납부제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7) 물론 이 경우도 신고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때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표준소득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장납부세액도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장신고 납부시의 세액이 무기장 추계과세시의 세액보다 많다고 하면 납세자는 무기장 표준소득률의 적용, 즉 무기장 추계과세를 선택할 것이다.

2. 신고납부에 미치는 효과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납세자는 성실기장을 하고 신고납세를 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의 납부세액 T_b 와, 정부부과결정세액인 무기장 추계과세액 T_s 를 비교하여 이 두 가지 경우 중 세액이 작은 경우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¹⁸⁾. 전자를 「기장신고납부」, 후자를 「무기장 추계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자.

1999년 1월 1일부터 기장신고 납부시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장세액공제가 신고납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자. 이때 기장세액공제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에 대한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자. 우선 기장신고납부시의 납부세액 T_b 는 신고자의 실제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액에 세율(이때의 세율을 t_b 라 하자)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또는 실제수입액에 실제소득률을 곱한 실제소득금액에 세율 t_b 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무기장 추계과세시의 납부세액 T_s 는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가 획득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표준)소득에 세율(이때의 세율을 t_s 라 하자)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때 만약 $T_b > T_s$ 이면, 즉 기장신고 납부시의 세액이 무기장 추계과세시의 세액보다 많다고 하면 납세자는 무기장 표준소득률의 적용, 즉 무기장 추계과세를 선택할 것이다. 반대로 $T_b < T_s$ 이면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성실기장신고납부를 선택할 것이다. 물론 $T_b = T_s$ 이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차이가 없는 경우이며 무기장 추계과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기장신고납부를 할 것인가는 $T_b = T_s$ 를 경계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무기장 추계과세와 기장신고납부의 선택을 t_b 와 t_s 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때 기장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인상(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기장신고납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나므로 위 경계선 그래프를 상향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기장신고납부 영역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3>에서는 기장세액공제의 확대(도입)의 효과를 a_1 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실제수입액이나 실제소득률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매출(수입)액이나 표준소득률이 높으면 기장신고가 늘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우선 신고매출액이 많아 실제의 소득과 비슷해진다고 한다면 납세자의 기장신고납부

18) 이 경우 납세자는 선택 집합(Choice set) Z 는 $Z = \text{Min}(T_b, T_s)$ 로 나타낼 수 있다.
 19) $T_b = T_s$ 의 관계식을 본문의 설명에 기초하여 $t_b = a t_s (a > 0)$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a 는 기장세액공제율, 추계수입금액, 실제수입액 및 실제필요경비 등의 함수가 될 것이다. 그림에서는 일차식, 즉 선형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림 2〉 무기장 추계과세와 기장신고납부의 선택

표준소득률이 높은
경우에 기장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높은
표준소득률을 적용받는
것이 신고납부하는
경우보다 부담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3〉 기장세액공제에 의한 기장신고납부의 확대효과

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준소득률이 높은 경우
에 기장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높은 표준소득률을 적용받는 것이 신고납부하
는 경우보다 부담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은 해당 업종의 평
균소득개념이므로 이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표준소득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세저항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기장 신고납부시 적용되는 세율, 곧 표준소득률을 낮게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표준소득률보다 낮은 소득을 얻으면서 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표준소득률을 낮게 적용하는데 이것이 기장신고납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왔다.

낮은 표준소득률은 기장신고납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낮은 표준소득률제도는 기장신고납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²⁰⁾.

V. 맺음말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이 기장세액공제나 간편장부제도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세정개혁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부과방식의 표준소득률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세금부과에 있어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준소득률의 경우 정부가 사업업종을 분류하여 그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소득금액의 산정시 각 업종의 평균적인 소득산정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소득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물론 과세당국이 납세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과약을 한다는 것은 과도한 징세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장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영수증 수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과세당국이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보상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납세문화를 보고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낮다고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법적이든 심지어 그것이 불법적이든 응당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주어진 제도를 이용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무기장 추계신고를 적용받을 것인가 아니면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를 할 것인가는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납세자 또는 세무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이나 일선 세무서의 징수담당자는 주어진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행동을 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포기하고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기장할 것을 요구하거나 실적 위주의 국가 수입 극대화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장을 통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의 적용이 필요하고 세무당국으로서 무기장을 조장하고 있는 제도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작업도 게을리

20) 한편 신고납부와 과표양성화율의 관계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하자. 과표양성화율이라 함은 실제소득 중에서 과세대상소득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소득은 「수입 - 필요경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표양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이 두 가지 요소에 누락이나 첨가가 없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장세액공제가 기장신고납부를 증가시키고 소득표준율제도가 기장신고납부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인 세정개혁의 방향은 명확해진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기장신고납부 정책을 위해서 기장세액공제 등의 성실기장에 대한 인센티브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이다. 현재는 기장조차 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고 기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부득이한 대안으로 표준소득률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하였듯이 현재와 같은 표준소득률제도가 성실기장신고납부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세정에서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것은 성실기장에 따른 근거 과세의 정착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방법으로서 세무사 등의 세무 원조에 대한 보조, 장기적으로 일본의 청색신고회와 같은 민간세무원조단체의 육성 등을 통해 성실기장문화의 조성을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²¹⁾

〈부표〉 주요 가산세 부과 내용

- 종합·퇴직·산림소득의 경우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해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무신고(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의 가산세를 부과
-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무납부기간에 따라 1일 0.05%(연 18.2%)의 가산세율을 적용, 즉 가산세=무납부·과소납부세액×1일 0.05%×경과일수 로 가산세를 부과
- 증빙불가산세 신설
 - 건당 10만원 이상 경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이 아닐 경우 영수증금액의 10%의 가산세액을 부과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
 - 가산세액은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한 지급액의 1%
 - 무기장가산세 신설
 - 간편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장시 소득산출세액×(기장에 의하지 않은 소득금액/소득금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 단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는 제외

주 : 1.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증빙불가산세,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무기장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료: 『매일경제』, 1998년 3월 5일자 4면.

장기적인 세정개혁의 방향은 기장신고납부 정책을 위해서 기장세액공제 등의 성실기장에 대한 인센티브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21) 일본의 신고납부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국중호, 「일본의 신고납부제도 운영과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8. 11, pp. 14~30을 참고바람.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



金 珍 洙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주회사의 일반적인
장점은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을 분리해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벤처사업을 촉진시키며,
조직·인사면에서의
마찰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1. 서론

1997년에 일본이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반세기 만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주회사의 일반적인 장점은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을 분리해 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벤처사업을 촉진시키며, 조직·인사면에서의 마찰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그룹의 회장실, 비서실 또는 기획조정실 등이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 왔는데, 이를 지주회사화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지는 합법적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여 최근 까지 이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에서도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OECD와 IBRD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주회사 설립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재벌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경제력집중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더욱 활력을 주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렇다고 지주회사의 설립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은 아니고 계열수단의 확장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하였다. 즉, 지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였다.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세제상 지주회사의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주회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 등 정비해야 할 세법과 제도의 개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지주회사가 금지되었던 이유와 최근 지주회사를 허용하기로 한 배경을 살펴본 다음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를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관련 과세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II. 지주회사의 정의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함)에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여기서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지주회사를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자신이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2). 여기에 추가하여 1998년 말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2에서는 지주회사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그 자신이 다른 본업을 행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나눌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는 다른 본업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는 스스로 생산·

공정거래법시행령에서는 지주회사를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자신이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야기하는
다양한 폐해가 차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판매 등의 고유사업을 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만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사업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대상이 아니었으며, 순수지주회사는 금지대상에 해당되었다.

III.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지주회사의 금지

1.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공정거래법은 1980년 말에 제정되어 198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1986년 말의 개정에서 기업의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재벌에 해당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공정거래법 제14조),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공정거래법 제12·13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금지(공정거래법 제8조), 상호출자금지(공정거래법 제9조), 출자총액제한(공정거래법 제10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공정거래법 제11조) 등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야기하는 다양한 폐해가 차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재벌들은 자기자본의 뒷받침 없이 부채로써 무분별하게 기업을 확장함에 따라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고, 과도한 경제력집중은 자원의 독점, 분배의 왜곡, 경쟁제한적 행위의 증대 등을 야기하였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결국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규제와 지주회사 금지의 두 가지 제도적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는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를 전면금지하는 상호출자금지제도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자신의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시행하였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설립 자체도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2. 지주회사의 금지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8조에 의해서 지주회사와 관련된 두 가지 행위가 금지되었다. 첫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즉, 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주회사의 설립주체는 사업자 또는 회사에 한하지 않으며, 국내법인은 물론 외국법인(외국인)도 포함된다. 둘째,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즉, 국내에서 이미 설립된 사업회사가 타 주식회사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그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IV. 지주회사의 허용

1. 지주회사의 허용 배경

일본이 1997년에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반세기 만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는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를 위해 필요하다¹⁾. 지주회사는 경영자가 일상적인 경영판단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점에서 전략을 신속히 결정하며, 자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책임의 명확화가 가능하며 그 평가도 명확하게 되어 각 사업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그룹의 회장실, 비서실 또는 기조실 등이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는

일본이 1997년에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반세기 만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1) 사업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업적보다 본사 사업부문의 업적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순수지주회사는 모든 사업부문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가능하며, 그룹 내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에서도 지주회사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OECD와 IBRD에서도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권고해 왔다.

데, 이를 지주회사화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지는 합법적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둘째, 지주회사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 독자적 사업이 없는 지주회사의 수입원은 배당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기업이나 부실기업은 정리할 수밖에 없다. 출자관계가 지주회사 대 자회사간에만 가능하므로 출자관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개별회사의 경영성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경영은 외형 위주가 아니라 수익성과 현금 유동성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셋째, 지주회사는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사업부제의 경우 특정부문의 실패로 인한 재무적 어려움이 전사적(全社的)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지주회사의 경우 위험은 해당 자회사에 투하한 자본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므로 위험이 분산된다. 벤처 비즈니스를 본사에 두면서 재무적인 면이나 종업원의 의식면에서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는 특정 자회사를 지주회사의 벤처 비즈니스 부문을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활용함으로써 벤처자본에 의한 활발한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지주회사는 조직·인사면에서의 마찰을 회피한 기업결합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기업문화와 노무조건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합병으로는 인사·조직의 일체화가 곤란하므로 기업통합을 실현하는 데 지장이 많다. 반면 각각의 기업을 독립된 형태로 통합하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수반되는 조직·인사면에서의 마찰을 회피하면서도 합병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주회사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에서도 지주회사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OECD와 IBRD에서도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첫째, 현재 구조조정이 성공리에 진행됨에 따라 향후 경제력집중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둘째, 재벌 그룹의 회장실, 비서실 또는 기조실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룹 회장의 법적 지위와 계열사간 조정기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점, 셋째,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2. 공정거래법의 개정내용

가. 지주회사의 기준

공정거래법시행령에서는 지주회사를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자신이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2에서는 지주회사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의 설립과 기존회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하였던 공정거래법 제8조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다.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지주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1) 순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1년간은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당해 자회사가 1999년 4월 1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예외로 한다.
- 3)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당해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첫째, 순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둘째,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셋째,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시행령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예외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사업범위 및 요건을
첫째,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할 것
둘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
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손자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
로 소유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
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이를 소유
할 수 있다.

라.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제한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
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채
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함)
간의 채무보증
-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 지
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마.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제한의 예외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 3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
는 비금융회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 정보처리 등의 역무의 제공
-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의 관리
-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4)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예외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 4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예외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사업범위 및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할 것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등의 역무의 제공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
 -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의 공급
 - 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 2)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V. 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문제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세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문제와 지주회사의 설립 후의 과세문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문제

지주회사의 설립방법은 분사화방식과 공개매수방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분사화방식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기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분사화하는 방법이며, 공개매수방식은 순수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사업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하여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이다.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문제는 자회사의 설립에 관련된 과세문제와 공개매수에 관련된 과세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자회사 설립에 관련된 과세문제

1)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가) 법인세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지주회사의 설립방법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기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분사화하는

분사화방법과

순수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사업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하여

자회사로 만드는

공개매수방식이 있다.

**지주회사의
현물출자재산 중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회사가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가액에서 지주회사의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자회사에 과세한다.**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나) 특별부가세

지주회사의 현물출자재산 중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회사가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가액에서 지주회사의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자회사에 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의 자산이 미등기 양도토지일 경우 세율 30%의 특별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며,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15%의 특별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법인세법 제99조, 제101조).

다) 부가가치세

양도자산 중 토지를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영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라) 저가 양도시 과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만일 양수법인이 양도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자회사에 대한 과세

자회사의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나. 공개매수에 관련된 과세문제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취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기타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가 과세된다. 그리고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법인 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20%의 특별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지주회사와 관련된 과세문제로는 자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또한 법인세 납부 후 지주회사에 배당된 배당소득도 지주회사의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2. 지주회사 설립 이후의 과세문제

가. 자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지주회사와 관련된 과세문제로는 자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또한 법인세 납부 후 지주회사에 배당된 배당소득도 지주회사의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기준으로 gross-up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문제

지주회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과세문제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법인세 과세 문제이다.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사화를 실시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전후의 조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설립 전보다 설립 후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사화한 후 자회사 중에서 일부는 흑자가 나고 일부가 적자가 나는 경우 흑자가 나는 기업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열회사 간 순이익과 순손실이 상계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분사화 이전에 비해서 세부담이

지주회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과세문제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법인세 과세문제이다.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사화를 실시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전후의 조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설립 전보다 설립 후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 경비 문제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와 개별 자회사를 관리하는 한편으로 개별 자회사를 상대로 재무관리 등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수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받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회사에서 손금산입되어야 할 비용이 지주회사의 결손금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 차입금 문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초과분 상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에서 부채비율 100% 미만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규제 조항이 없다. 차입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식구입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VI. 지주회사 관련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검토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문제와 지주회사의 설립후의 과세문제의 해결방안을 검토해 본다.

1.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문제 정비방안 검토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주회사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자회사의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시 법인이 개인에 비해서 세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주식시장의 경우 법인에 의한 주식보유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를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에 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주식시장의 경우 법인에 의한 주식보유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를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에 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지주회사 설립 이후의 과세문제 정비방안 검토

가. 이중과세문제 해결방안 검토

지주회사와 관련된 과세문제는 주로 지주회사 설립 이후가 문제가 된다. 먼저 자회사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자회사의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후에 지주회사에 배당된 배당소득도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의 gross-up 방식과 마찬가지로 지주회사가 실제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를 더하여 법인세가 없는 경우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귀속법인세가 가산된 배당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를 차감(배당세액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만큼만 납부하도록 하면 이중과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둘째, 지주회사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없이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문제와 경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자회사간에 각 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OECD 회원국들만 본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벨기에, 캐나다,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터키 등 10여개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구미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기업이 분사화 또는 사업부제 중 어느 하나의 사업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

자회사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gross-up 방식과 마찬가지로 지주회사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기업전략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부문의 분사화나 합병 등의 기업구조조정이 경영전략에 있어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법하에서는 동일한 그룹 내에서도 사업회사간 및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에 손익통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사화 이전에 비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분사화를 단념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조직 형태의 선택에 대하여 세제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우리 경제의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0년부터 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당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주회사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채택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동일한 그룹 내에서 사업회사간 및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에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해서 법인세의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둘째, 연결납세제도의 이용이 대기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연결납세제도는 대기업을 우대하는 세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내부거래나 채무액을 그룹 각사간에 명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기업의 가장작업이 많아진다.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제도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연결의 범위 선정

모·자회사를 연결할 수 있는 대상을 지주비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모·자회사간에 연결의 대상이 되는 지주비율은 미국의 경우는 80%, 영국은 75%, 독일은 50%, 프랑스는 95%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는데, 지주비율을 50%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제도를 보

다 엄격히 운용하려고 한다면 모·자회사를 연결할 수 있는 지주비율을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납세의무자의 지정

모·자회사를 연결하여 세액이 결정될 때 지주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 또는 세액을 안분하여 개별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개별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프랑스의 경우 지주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이월결손금의 인정 여부

모·자회사간의 소득 및 손실을 합산함에 있어서 개별법인의 결손금이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된다. 이때 결손금은 동일연도에 있어서의 상쇄만 가능한 것으로 할 것인지 전후 연도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4)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연결납세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별회사의 결손금을 그룹 전체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적자회사는 장래에 자신의 결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적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무자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5) 지주회사과세의 국제적 측면

세제상 가장 유리한 한 나라에 지주회사를 두고 원천세율의 경감이나 수취배당의 비과세조치 등을 이용하면서 국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다. 조세 조약의 남용, 다국적기업의 지주회사와 각국 사업회사간의 이전가격, 조세피난처의 이용 등 국제간의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문제와 경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자회사간에 각 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Ⅶ. 결론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지주회사와 관련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동일한 그룹 내에서 사업회사간 및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에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해서 법인세의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여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주회사와 관련한 과세문제는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과세문제와 지주회사 설립 이후 발생하는 과세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시에는 별다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시 법인이 개인에 비해서 세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주식시장의 경우 법인에 의한 주식보유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를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에 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설립 이후 발생하는 과세문제로는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나서 또 지주회사에 배당된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 계열회사간 순이익과 순손실이 상계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분사화 이전에 비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 문제 등이 있다. 먼저 자회사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gross-up 방식과 마찬가지로의 방법을 사용하든가 지주회사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문제와 경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이 외에도 기업이 분사화 또는 사업부제 중 어느 하나의 사업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가 중립성을 유지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해서 법인세의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연결납세제도가 대기업을 우대하는 세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부거래나 채무액을 그룹 각사간에 명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기업의 기장작업이 많아진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제도화한다면 모·자회사간에 연결의 대상이 되는 지주비율을 선정하고, 모·자회사를 연결하여 세액이 결정될 때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결손금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적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무자를 보호하는 등의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PF**

자산유동화 개요



李相燮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IMF 위기 이후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누적되는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이를 원활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증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금융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이로 인한 재정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바, 부실자산의 규모와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직접매각방식보다는 증권화를 통한 자산의 유동화가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한편 BIS 자기자본비율의 충족 등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 유지 및 자본의 효율적인 이용이 금융기관의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동화는 자기자본비율의 증가를 통한 자본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산부채관리를 통한 위험관리능력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자산의 유동화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고 주택금융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IMF 위기 이후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누적되는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이를
원활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증하고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유동화의 성장과
폭넓은 보급을 위해서는
수요의 개발과 관련된
법제, 회계, 조세제도 등의
하부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1998년 9월에 제정되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자산유동화에 장애가 되어 왔던 많은 요인들을 제거하여 자산유동화의 촉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의 성장과 폭넓은 보급을 위해서는 수요의 개발과 관련된 법제, 회계, 조세제도 등의 하부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원고에서는 현재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자산유동화의 기본개념과 구조 및 경제적 효과의 간략한 소개와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자산유동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자산유동화 도입의 필요성과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연구·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자산유동화의 개념 및 구조

1. 자산유동화의 개념 및 효과

가. 자산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란 민간 또는 공공법인이 자기의 상환능력이 아닌 어떤 특정한 자산으로부터의 예상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통가능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보유자가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모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자산유동화란 직접매각 등의 넓은 의미의 자산유동화가 아닌 좁은 의미의 자산유동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이를 증권화(securitization)라고도 일컫는다¹⁾.

증권화는 또 다시 簿內證券化(on-balance securitization)와 簿外證券化(off-balance sheet securitization)로 나눌 수 있다. 簿內證券化는 자산보유자가 자신 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증권화 또는 유동화되는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재무제표에 남아 있고 증권의 발행주체는 자산보유자가 된다. 따라서 자산보유자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산유동화는 유럽에서 발달되었고(예를 들어 mortgage bond, communal bond 등) 이 경우 발행되는 유동

1) Securitization이라는 용어는 1977년 Bank of America에 의해 최초로 발행된 pass-through security에 관한 Wall Street Journal의 "Heard on the Street"이라는 칼럼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외에도 Structured Financing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화채권을 흔히 擔保附社債(secured bond)라 칭한다. 簿外證券化는 유동화증권이 자산보유자와 별개인 독립적인 개체에 의해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동화되는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재무제표에 남아 있게 되지 않으므로 모든 위험이 투자자에게로 전가되며 이 경우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資產擔保附證券(Asset Backed Security)이라고 한다. 住宅抵當證券(Mortgage Backed Security)도 資產擔保附證券의 일종이지만 그 시장규모가 큰 관계로 住宅抵當證券은 여타 資產擔保附證券과 별도로 구분하며 통상적으로 資產擔保附證券은 住宅抵當證券을 제외한 여타 資產擔保附證券만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고 있다. 資產擔保附證券은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의 파산으로부터는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유동화 전문회사(Special Purpose Vehicle)에 의해 발행된다. 여기서 다루는 자산유동화는 簿外證券化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자산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향상시키고, 수수료
수입을 늘림으로써
자본수익률을 제고시키며
또한 자산/부채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나. 자산유동화의 경제적 효과

자산유동화는 기존의 자금조달 수단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는 첫째, 금융기관 건전성의 제고와 위험관리능력의 향상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은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자산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향상시키고, 수수료 수입을 늘림으로써 자본수익률을 제고시키며 또한 자산/부채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자산유동화는 부실자산의 정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TC)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셋째, 자산유동화의 또 다른 주요 효과로 자본조달비용의 절감을 들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으나 양질의 자산(receivable)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 및 비금융기관은 화폐시장 또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빌리는 것보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넷째, 자산유동화는 여러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발전과 효율성 및 안전성의 증진에 기여한다. 유동화된 자산은 유동화의 과정에서 연루된 여러 시장참여자(자산보유자, 투자은행, 신용평가기관, 투자자 등)에 의해 계속적인 주시를 받음으로써 자산에 내포된 위험이 보다 투명해지고 따라서 가격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자산유동화는 각 주체가 자신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에 특

자산유동화의 도입을 위한 법률, 회계기준, 조세 등의 금융하부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금융 자본시장의 기반을 뒤흔들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화하고 자신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위험만을 택하게 함으로써 위험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유동화과정에서 위험을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보호망(safety net)하에 있는 금융산업으로부터 최종 투자자로 이동시킴에 따라 조직적 위험(systematic risk)을 저하시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유동화는 자산 및 그로부터의 현금의 흐름을 재구성하여 투자자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자산보유자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주택저당증권은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한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대한 우려의 측면도 몇 가지 지적되고 있다. 우선 자산의 증권화로 인하여 은행과 은행대출의 역할이 줄어들어 따라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융중개 및 기업지배구조의 양상이 변화될 우려가 있으며 자산유동화의 도입을 위한 법률, 회계기준, 조세 등의 금융하부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금융 자본시장의 기반을 뒤흔들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유동화가 쉬운 우량자산만이 유동화됨으로써 은행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으며, 자산이 유동화되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이 투자자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은행의 대출심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2.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및 관련당사자²⁾

가.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자산유동화의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자산유동화의 첫 단계로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당해 자산을 유동화 전문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중개회사(conduit)에 매각이나 신탁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 ② 유동화 전문회사 또는 중개회사는 양도나 신탁받은 자산을 집합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동 자산에 대하여 신용평가가 실시되며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용보완이 이루어진다.
- ③ 증권이 발행된 경우 근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모아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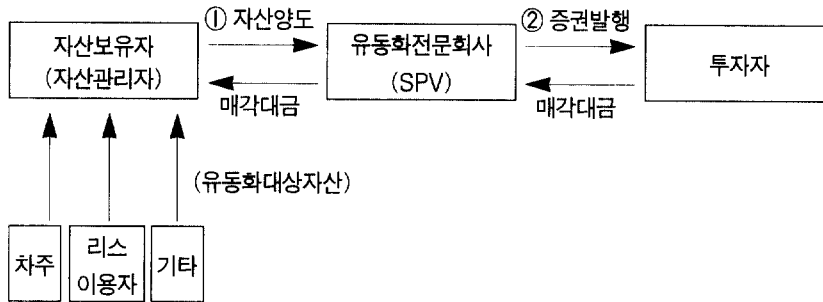
2)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신성환·배철호(1995), 윤승한(1998) 참조.

자(service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의 성패는 대상자산의 구성과 현금흐름의 구조를 어떻게 체계화하는가에 달려 있다 하겠다.

**자산유동화의 성패는
대상자산의 구성과
현금흐름의 구조를
어떻게 체계화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림 1) 원리금 또는 배당금 지급사무



나. 자산유동화의 주요 관련주체 및 업무

1) 자산보유자(originator)

자산보유자는 신용등급의 향상, 재무구조의 개선 및 자본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유동화자산을 집합하여 특별목적기구에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로서 일반적으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이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³⁾

2) 특별목적기구 또는 유동화 전문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는 자산유동화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실체를 가지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고 이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주체이며 회사, 조합, 신탁, 기타 특수법인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SPV 설립의 주요 목적은 자산과 자산으로부터의 현금의 흐름에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분리·보호된 법적 지위를(bankruptcy remote status) 부여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고, 분리된 자산과 현금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들의 신용을 보완하는 등 여

3)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SPV는 자산유동화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실체를 가지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고 이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주체이다.**

러 경제적 행위를 하기 위함이다. SPV는 대륙법체계의 수탁자(trustee)와 유사한 존재로서 신탁에서 자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이전되는 것과 같이 자산의 소유권이 자산보유자로부터 SPV로 이전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상속을 위한 신탁을 설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이 SPV의 설립을 위해 적용될 수 있었으나 후에 SPV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

SPV의 형태 및 성격은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의 특성, 설립비용 및 절차, 세제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형태에 따라 조합형, 신탁형, 회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합형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설립 및 해산이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유동화증권은 조합의 지분형태를 취하는 자동이체식(Pass-Through)증권이 된다. 신탁형의 경우는 유동화자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수익증권과 같은 증서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신탁된 금전으로 그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를 가지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유동화증권은 자동이체식증권이 된다. 회사형 SPV는 SPV가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의 법인격을 갖고 매입한 자산을 근거로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 지분증권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의 유동화증권은 원리금지급이체형(Pay-Through)증권이 된다. SPV는 보통 1회 발행 후 해산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SPV는 자산을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분리·보호하여 주지만 유동화증권의 신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의 분리뿐만 아니라 SPV 자체의 파산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유동화 계획 이외의 타업무에의 종사금지, 유동화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담보이용의 금지, SPV의 파산신청과 업무변경에 대한 엄격한 규제, 독립된 회계관리, 타 회사와의 합병 및 자산의 처분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신용평가 및 보완기관(credit rating and credit enhancing agencies)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조기상환위험(prepayment risk),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등 여러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의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자가 자산보유자에 대한 청구권(recourse)이 없기 때문에 신

용위험이 특히 중요하고 따라서 이를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은 자산의 가치 및 자산으로부터의 현금의 흐름을 과거의 자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 및 특정한 신용등급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용보완의 정도를 결정한다. 자산의 가치 및 현금의 흐름 이외에도 자산관리자의 내부관리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조항의 명시성,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 기타 신용보완요인들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들로 작용한다.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이 적절치 못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신용보완이 필요하다. 신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내부적 및 외부적 방법이 있다. 내부적 신용보완으로는 선순위채권(senior debt)·후순위채권(subordinated debt)을 발행하고 자산보유자가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으며⁴⁾ 그 외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액을 담보가치 이하로 발행(overcollateralization)하거나 현금담보구좌(cash collateral account)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외부적 신용보완은 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외부 신용보완기관으로부터 부분적(partial guarantee) 또는 전체적(wrap-around)인 신용보증을 받는 것으로 이 경우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신용보완기관의 신용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는 'weak link rule'이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신용보완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신용증대기관(monoline insurer)이 발달하였으며 이들 기관들은 모두 AAA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4) 자산관리자(servicer)

SPV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로서 채권을 추심하고 담보권을 직접 실행하여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SPV는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세워진 법적 수단에 불과한 서류상의 회사이므로 스스로 유동화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따라서 SPV의 자산 및 자산의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자산관리자는 채권의 추심, 채무불이행시의 집행업무, 부동산의 매각, 임대료 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이 적절치 못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신용보완이 필요하다. 신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내부적 및 외부적 방법이 있다.

4) 이 경우 자산이 자산보유자로부터 SPV로 진정한 매각되었느냐(true sale)에 대한 법률 또는 규제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유동화자산의 후순위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순위유동화증권은 공모로 발행되고 후순위유동화증권은 사모로 발행되기도 한다.

**유동화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은
주식, 출자증권, 회사채,
기업어음, 수익증권 등
여러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

5) 주선기관(Arranger)

주선기관은 유동화 자산을 분석하여 그에 적절한 자산유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목적기구의 설립, 신용평가, 신용보완, 유동성 보완, 자산관리 등 계획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설정하고 해당계약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보유자가 이러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산보유자는 유동화 과정에서 하나의 당사자에 불과하고 그 업무는 증권회사 등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기타

이 밖의 주요 관련자로서 증권회사, 투자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

3. 자산유동화의 대상범위 및 유동화증권의 형태

가. 대상범위

자산유동화의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제약은 없지만 자산유동화의 경제적 이점과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산이 적합하다. 첫째, 서류의 양식이 정형화(standardization)되어 있고 채권의 형태가 동질적(homogeneous)이어서 자산을 집합시키기가 용이하다. 둘째, 신용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고 상환형태가 명확하며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상환 연체율 및 채무 불이행률이 높지 않고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을 추정할 수 있다. 넷째, 차입자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위험의 분산을 피할 수가 있다. 이러한 유동화자산의 예로는 주택저당채권, 리스채권, 자동차 할부채권, 신용카드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나. 유동화증권

유동화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은 주식, 출자증권, 회사채, 기업어음, 수익증권 등 여러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 담보의 종류에 따라 크게 주택저당증권(MBS)과 기타 자산담보부증권(ABS)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산담보

부증권의 종류로는 신용카드의 납입금, 자동차 할부금, 상업용 건물 대부금, 리스 채권, 학생대출금 등의 유동화증권을 포함하여 CLOs(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CBOs(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⁵⁾ HELs(Home Equity Loan Securities) 등이 있다.

유동화증권은 또한 기초자산의 위험전가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식증권(pass-through security)과 원리금이체식증권(pay-through secur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 자동이체식증권은 대출채권을 집합화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⁷⁾ 그 집합의 일정지분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원채권에 대한 변제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는 회수된 자금(원리금 + 만기전 상환(prepayment))을 비례적으로 할당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하며 집합자산의 소유권은 투자자가 갖게 된다. 원리금이체식증권은 유동화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소유자는 SPV가 되고 유동화증권의 소유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이체식증권과의 이러한 차이는 조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원리금이체식 유동화증권은 mortgage bond와 같은 담보부사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과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과 자산이 자산보유자(originator)의 재무제표로부터 SPV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이 투자자에게로 이전된다는 차이점이 있다⁸⁾. 1983년에 처음 소개된 후 폭발적인 증가를 해온 CMOs(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⁹⁾도 원리금이체식 유동화증권의 일종이다. CMOs는 자동이체식 주택저당증권이 가지는 역볼록현상(inverse convexity)¹⁰⁾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주택저당증권의 일종으로 자동이체식 주택저당증권을 담보로 하여 여러 계층(multi-class)의 유가증서(tranche)를 발행하고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자산으로부터의 원리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기상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켜준다.

4. 자산유동화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

자산유동화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자산유동화를 비용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계, 조세 및 규제체계 등의 하

5) CLO와 CBO는 각각 은행의 기업대출과 고금리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으로 여타 대출관련 자산유동화 행위는 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주요 동기인 반면 CLO와 CBO는 裁定去來(arbitrage transactions)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CLO는 최근 유럽에서 발행되는 자산 담보부증권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이 용어들의 번역은 신성환·배철호(1995)를 따랐다.

7) 이런 경우 수여자신탁(grantor trust)을 사용한다.

8) mortgage bond와 같이 자산보유자가 직접 발행하는 원리금이체식채권도 원리금이체식유동화 증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자산유동화는 부외유동화(off-balance securitization)가 아니므로 본 논문에서 취급하는 협의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할 수 없다.

9) CMO를 신성환·배철호(1995)는 주택담보부 채무증서, 윤승한(1998)은 복층형주택저당증권이라 각각 번역하고 있다.

10) 일반적인 회사채의 가치는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증가하나 주택저당채권과 이를 담보로 발행된 자동이체 주택저당증권은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채권이 만기 전 상환될 수 있으므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를 위한
근거법의 설정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산유동화체제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법령이나 관행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구조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산유동화를 도입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하부구조의 변화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기존의 금융체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여러 OECD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호사, 감독규제기관, 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수립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여러 시행착오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자산유동화를 위한 근거법의 설정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산유동화체제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법령이나 관행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기법을 다른 체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의 법률체계하에서 SPV와 같은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분리·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진 기관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을 개조하거나 법령의 새로운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¹¹⁾. 채권의 이전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채권의 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이전 의도의 통보를 의무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산유동화가 적합한 자산들은 대규모의 채무자로부터 발생하는 동질적인 채권들이므로 개별적인 통지가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SPV로의 채권의 이전이 자금조달(financing)이 아닌 '진정한 매각(true sale)'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의 마련도 중요한 문제이다¹²⁾. 채권의 이전이 '진정한 매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 유동화자산이 법적으로 파산재단이나 정리회사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자산유동화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채무자의 프라이머시 및 투자자의 보호 등이 자산유동화를 위한 근거법의 설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자산유동화를 위한 회계 및 규제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유동화와 연관된 금융기관의 특정 업무활동이 재무제표상의 부외항목으로 처리(off-balance sheet treatment)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자산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SPV로 이전된 자산이 회계상으로 자산보유자의 재무제표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 즉 SPV로의 자산의 이전이 회계상으로 자금조달(financing)이 아닌 실질

11) 예를 들어 프랑스는 SPV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나 프랑스의 법률 체계에 보다 적합한 Fonds Communs de Creances (FCC)의 설립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다.

12) 진정한 매각의 판단기준으로는 자산보유자의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의 포기, 자산보유자에 대한 상환청구권(recourse)의 존재유무, 양도가격의 적정성, 양도자산의 부외처리(off-balance sheet treatment) 여부 등이 있다.

적인 자산의 매각(sale)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진정한 매각'의 법적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연관된 문제로서 자산보유자와 자산관리자의 재무제표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으며 후순위 채권 지분의 취급, 여러 유동화증권의 위험가중치를 정하는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회계상의 문제들이다.

회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는 회계절차의 투명성이다.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올바른 회계정보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점차 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자본시장에서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회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계의 투명성 및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이는 자산유동화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본조달수단으로서 자산유동화의 경제적 타당성은 저하시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조세체계의 확립도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자산의 유동화를 다른 자금조달수단에 비해 비경제적으로 만드는 조세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자산유동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채권계약의 적절한 문서화 및 정형화, 자산유동화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back-office 체제의 개발, 채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신용평가능력의 제고 및 평가기관의 육성, 그리고 금리의 현실화도 자산유동화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구축되어야 할 주요 하부구조들이다.

자산유동화의 성공적 도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본절에서 언급된 하부구조의 구축이 필수적이나 적절한 하부구조의 개발이 반드시 미국에서와 같이 자산유동화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유동화의 발전은 적절한 하부구조의 구축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 유인의 존재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산유동화는 금리의 변동이 심하여 금융기관의 자산/부채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가 어렵거나, 금융기관이 심한 부실자산문제를 겪고 있을 때, 기존 주택금융의 공급이 미흡하거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리고 직접금융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발달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건실하며 자산/부채간의 듀레이션 불균형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면 그만큼 자산유동화의 유인이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의
성공적 도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하부구조의
구축이 필수적이나
적절한 하부구조의
개발이 반드시
미국에서와 같이
자산유동화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자산유동화의
 촉진요인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지원
 유동화중개기관의 설립과
 적절한 법률·회계·조세
 체계 등의 하부구조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III. 외국의 사례

1. 미국

과거 20년간 자산유동화는 미국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금의 중개에 있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과 직접자본시장간에 균형을 이루어 왔으나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이탈(disintermediation)과 이들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는 이러한 추세에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자산유동화의 촉진요인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지원 유동화중개기관의 설립과 적절한 법률·회계·조세체계 등의 하부구조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은행들간에 효율적인 자금의 지역적 배분과 지역적인 위험의 분산 필요, 고정금리의 관행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간의 만기 불일치 문제의 심화, 주택금융공급의 부족,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부실자산의 정리와 자본의 효율적 이용의 필요성 증대 등과 같은 경제적 유인과 금융기관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금융기관간의 경쟁, 폭넓은 기관투자자의 기반과 금융감독기관의 진취적인 사고도 미국에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에 주요 촉진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산유동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0년도 후반부터 몇몇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성공적 도입과 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가.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

자산유동화로 인해 미국에서 발행된 유동화증권 중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전체 유동화증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발행잔액은 1998년 6월 말 현재 2조 8천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¹³⁾ 현재 미국 주택저당채권의 2/3 가량이 증권으로 유동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택금융은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s)과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s)을 중심으로 한 저축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어 왔다.

13) 윤승한(1998), pp. 59.

따라서 주택금융의 공급은 이들 저축금융기관의 예금에 의한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할 뿐 아니라 법과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이러한 저축금융기관들의 저축과 대출에 대한 자금증가는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지역 간의 자금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왔다. 지역간의 자금편중현상은 주택저당중개인 (mortgage banker)의 출현으로 완화되었으나 전체적인 자금조달의 제약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 특히 1960년대 말 금리가 상승하여 이들 예금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균형으로 인한 자산/부채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택저당채권의 유통시장을 촉진시켜 주택금융자원의 기반을 과거의 저축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고 주택저당대출 관련 금융기관의 자산/부채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주택저당채권의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저당채권을 투자자의 구미에 맞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였고 주택저당채권의 개발은 이러한 경제적 요구에 부응한 금융시장 혁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주택저당채권 유통화를 활성화시킨 요인 중에서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주택저당채권의 유통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이를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government agencies) 또는 정부지원기관들(government sponsored entities: GSE)의 적극적인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주택저당채권의 유통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1930년대 대공황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은 주택저당대출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험(또는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저당대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34년에 미국 의회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주택저당대출에 대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보증대상 주택저당채권의 요건을 확립함으로써 주택저당대출의 정형화를 유도하여 주택저당채권 유통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1938년에는 FHA에 의해 보증된 주택저당채권의 유통시장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기관인 FNMA(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약칭 Fannie Mae)가 설립되었다¹⁴⁾. FNMA는 FHA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이 들 주택저당채권의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1968년 Fannie Mae를 현재의 Fannie Mae와 정부기관인 GNMA(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약칭 Ginnie Mae)로 나누고, Ginnie Mae로 하여금 정부의 신용

미국에서 주택저당채권 유통화를 활성화시킨 요인은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주택저당채권의 유통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이를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 또는 정부지원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14) Fannie Mae는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어 있는 민간 기업이나 Freddy Mac과 같이 정부에 의해 인가된(chartered) 법인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기관(Government Sponsored Entity)이라고 부른다. 미국 재무성은 Fannie Mae와 Freddy Mac의 사채를 22억 5천만달러까지 매입할 수 있다.

1968년에 처음으로 발행된 Ginnie Mae 자동이체 주택저당증권이 실질적인 유동화 증권발행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S. Government)을 바탕으로 FHA, VA(Veterans Administration), FmHA(Farmers Home Administration)에 의해 보증된 주택저당채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Ginnie Mae는 지정된 주택저당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자동이체 주택저당증권의 보증을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여 비유동적인 주택저당채권을 정부에 의해 원리금이 보증된 유동적인 증권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택금융의 공급과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1968년에 처음으로 발행된 Ginnie Mae 자동이체 주택저당증권이 실질적인 유동화 증권발행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70년에 미국 의회는 Fannie Mae로 하여금 정부기관에 의하여 보증되지 않은 일반주택저당채권(conventional mortgage)의 매입을 허락하였고 일반주택저당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기관(GSE)인 FHLMC(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약칭 Freddy Mac)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Freddy Mac은 주로 일반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증권¹⁵⁾을 발행하고 이를 보증함으로써 일반 주택저당채권시장의 활성화와 유동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1983년에 Freddy Mac에 의해서 처음 발행된 CMOs와 1984년부터 시작된 스왑 프로그램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유동화의 성장, 발전 및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⁶⁾. Fannie Mae도 1981년부터 매입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보증업무를 시작하였으며 Freddy Mac과 같이 스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20여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저당증권시장의 급격한 성장의 배후에는 이들 정부기관 또는 정부지원기관의 유동화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이들 정부지원 유통중개기관이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은 1998년 6월 30일 현재 약 2조 5,400억달러에 달하며 전체 발행잔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 세 기관이 정하는 유동화 자격요건(예를 들어 채권액의 상한제한, 대출/자산가액 비율의 상한제한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저당채권(nonconforming mortgages)의 유동화는 민간 유동화 중개기관에 의하여 정부관련기관의 보증 없이 유동화되어 왔다. 최초의 민간 중개기관에 의한 일반주택저당증권(private label mortgage backed securities)은 1977년 Salomon Brothers를 주간사로 Bank of America에 의하여 발행된 자동이체 주택저당증

15) Freddy Mac의 주택저당증권을 Participation Certificate이라고 하며 최초의 PC는 1971년에 발행되었다.

16) Freddy Mac은 현금 프로그램과 스왑 프로그램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는데 1984년에 시작된 스왑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은 부실 저축금용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권이다. 민간주택저당증권시장의 개발 및 발전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있어서 민간부분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의 지원¹⁷⁾ 과 민간부문 혁신의 결과이다. 특히 1984년에 제정된 「Secondary Mortgage Market Enhancement Act(SMMEA)」는 널리 알려진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민간주택저당증권에 대해 이들 증권을 연방인가은행(federally chartered banks), 저축금융기관(thrifts) 및 주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투자대상으로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들 증권의 시장성을 제고시켰다. SMMEA와 더불어 SEC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의 민간주택저당증권에 대한 발행 등록요건 규제완화¹⁸⁾ 및 1986년에 취해진 세법개정¹⁹⁾ 은 민간부문 발행 주택저당 증권의 시장개발에 전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1998년 6월 말 현재 민간부문에 의해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의 잔액은 약 2,7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나. ABS

MBS시장의 성공은 다른 자산의 유동화로 이어졌다. 1985년 Sperry Lease Corporation의 리스채권의 유동화를 효시²⁰⁾ 로 대량 집합화가 가능하고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 불이행률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및 문서화가 정형화되어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유동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신용카드의 납입금, 자동차 할부금, 상업용 건물 대부금, 리스채권, 기업대출 등이 유동화되고 있다. ABS의 유동화는 1998년 6월 말 현재 약 5,5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다. 부실자산의 유동화

자산유동화의 중요한 적용분야 중의 하나가 부실자산의 정리이다. 자산의 유동화는 부실 저축대부조합(S&L)을 정리하기 위해 1989년에 설립된 정리신탁공사 (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TC)의 부실자산 정리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하여 RTC는 초기에는 전통적인 자산매각에 의존하였다. RTC의 매각자산은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나 경영권(managerial control)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개인 투자자에게 매입되었으나 RTC는 매각된 자산이 결국 자산의 재구성(repackaging)을 통하여 유동화되는 것을 인식하고 1992년 4월 이후 직접적인 자산의 유동화를 부실자산정리 방법으로 선호하기 시작했다. RTC가 보유하고 있던 일부분의 주택저당채권은 Ginnie Mae나 Fannie

17) 미국 정부는 정부기관 및 정부지원기관의 보증으로 인한 정부의 잠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부문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8)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시 발행기관은 보통 증권의 매출과 동시에 담보자산을 집합하므로 발행증권을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할 당시 담보자산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SEC는 이러한 미확정 자산(blind pool)을 담보로 한 증권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SEC의 등록이 면제된 정부지원기관 보증증권(agency security)과 달리 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SEC는 1983년에 주택저당증권 발행의 등록조건을 완화하여 미확정 자산을 담보로 하더라도 일정한 신용등급과 미확정 자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등록과 일괄등록(shelf registration)을 허락하고 정기적인 증권의 공시의무도 완화하였다.

〈표 1〉 미국의 ABS/MBS 발행현황

(단위 : US 10억달러)

담보자산	1995	1996	1997	1998Q1
신용카드	48.7	54.7	46.1	9.7
자동차대출	33.3	38.7	42.0	8.7
조립주택	6.3	8.6	9.8	3.4
학자금대출	3.6	9.5	14.4	4.6
기타	11.8	29.7	65.2	16.1
총 ABS	119.2	174.0	233.0	57.4
Agency MBS	269.1	370.5	368.0	132.5
Private MBS	37.6	39.6	63.6	105.6
Private CMBS	16.6	28.4	41.6	18.3
총 MBS	322.9	438.5	473.2	256.4

19) 1986년 세법개정(Tax Reform Act of 1986)이 통과되기 이전의 세법 하에서는 수여자신탁(grantor trust)이 단일 종류의 자동이체증권을 발행할 경우 수여자신탁을 하나의 導管(conduit)으로 취급하여 세금부과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나 수여자 신탁이 복합증권(multi-class bonds)을 발행할 경우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제약이 있었다. 1986년 세법개정(Tax Reform Act of 1986)에서는 새로운 신탁기관인 부동산저당채권 투자중개기관(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을 도입하여 복합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조세제약을 제거함으로써 민간주택저당증권을 개발·구성하는 데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20) ABS 거래의 효시를 1960년대 초 Continental Bank가 Sears Roebuck and Co.의 신용카드납입금을 유동화한 사례로 보는 경우도 있다 (Asiamoney Dec. 1997/Jan. 1998).

자료 : OECD, DAFFE/CMF(98)30

Mae의 자산유동화 pool에 포함되었으나 대부분의 자산은 RTC의 CMO로 유동화되었다. 초기에는 유동화가 쉬운 개인주택저당채권이나 소비자 대부 등이 유동화되었으며 유동화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채납비율이 높은 주택저당채권이나 다세대거주용 주택저당채권(multi-unit residential mortgage) 등도 결국 유동화되었고 RTC가 발행한 대부분 자산담보부채권은 AA 또는 AAA의 등급을 받았다.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분량이 커서 위험분산(diversification)이 어려운 자산들, 자료의 분석을 통한 통계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자산들도 집합화(pooling)와 신용보완을 통하여 유동화되었다. RTC의 자산유동화기법은 유동성이 없는 대규모 자산의 처분을 비교적 단기간에 성취 가능케 하였고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자제토록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하는 이중효과를 가져왔다.

2. 영국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자산유동화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이다. 그러나 MBS와 ABS 시장의 규모는 1994년 잔액기준으로 각각 160억파운드, 30억파운드에 불과하여 미국시장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는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Special Mortgage Lenders(SMLs)라는 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전문회사에 의하여 대부분 이루어졌다. 1985~1986년에 새로 설립된 SML에 의하여 MBS의 발행이 급성장했으나 1988년을 정점으로 주춤해지기 시작해 아직까지 전체 주택저당대출의 약 3% 정도만이 유동화되고 있을 뿐이다.

영국은 법률이나 규제체계가 미국과 유사하여 자산유동화가 비교적 용이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유동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큰 이유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심과 수요의 부족이다. 발행자의 측면에서 주택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building societies)은 자본이 건실하고 비교적 저리의 자금공급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저당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투자자의 측면에서도 MBS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발행되어 연금의 투자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또한 1990년대 초에 걸친 MBS의 위험가중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MBS에 대한 투자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계속적으로 자산의 유동화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다.

**영국에서
자산의 유동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큰 이유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심과
수요의 부족이다.**

3. 프랑스

프랑스도 1980년대 후반에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자산유동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하부구조의 문제로 역외 자산유동화(off-shore securitization)나 아니면 자산유동화를 위한 새로운 국내 하부구조(법, 규제 등)를 개발하느냐는 갈림길에서 후자를 선택하였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최초로 자산유동화법을 제정하였다. 1988년에 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SPV와 유사한 기관인 Fonds Commun de Creances(FCC)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걸림돌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1992~1993년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담보자산의 대체 허용(1994년), FCC의 지속적 유동화 업무 및 부실자산 인수의 허용, 외환 스왑거래의 허용 등 자산유동화의 촉진을 위한 계속적인 규제정비를 해온 결과 현재는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한 상당히 선진화된 법률과 규제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하부구조의 정비와 더불어 거주용 주택저당

프랑스는 유럽에서 최초로 자산유동화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한 상당히 선진화된 법률과 규제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권, 상업용 부동산대출, 소비자 대출 등 잠재적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의 풍부한 공급,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증대, 유동화증권에 대한 수요의 증대, 최근 금리의 하향화 추세와 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압력의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유동화 필요성 증대 등으로 프랑스 자산유동화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산유동화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²¹⁾.

여러 긍정적인 여건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요인으로 프랑스의 분산적이고 이질적인 금융시장의 특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금융시장체계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양한 여신금융기관들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이질적이며 이들 이질적인 여신기관에 의한 대출 특히 주택대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위험 프로필이 다양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투자자의 부담이 크다. 이 밖에도 주택대출금리가 정책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으며, 자료의 미비로 인한 가치평가(valuation)의 어려움, 부동산을 유동화 하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법률적 어려움²²⁾도 자산유동화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독일

독일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으로 인하여 자기자본비율의 확충을 위한 미국형 자산유동화에 대한 필요가 크지 않았다. 또한 독일은 mortgage bond (phandbriefe) 시장의 발달로 주택금융이 활성화되어 있고 고정금리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자산/부채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자산유동화 도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은행감독기관도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했는데 이는 SPV가 부실하면 이러한 채무를 은행이 떠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자산유동화는 비금융기관과 은행들의 역외 자산유동화회사를 통한 간헐적인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산유동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도 장래에 보다 활발해질 조짐이다. 특히 그 동안 자산유동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던 독일연방 은행감독기관(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BAK)이 1997년 5월에 자산유동화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자산유동화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독일의 자산유동화 활성화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지침사항은 매우 세부적이고 자산보유자와 SPV의 관

21) 1997년에 ABS의 발행은 690억프랑(약 113억달러)에 불과하였으며 Credit Lyonnais와 같은 소수의 대규모 유동화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2) 프랑스의 자산유동화 법률은 부동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부동산 대출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에 대한 채권의 유동화만을 허락하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유동화는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유동화에 대한 이러한 법률적 제약이 비록 임시적이기는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

계, 실질적인 매각 등과 같은 주요한 사항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지침의 발표가 일각에서 기대한 바와 같은 자산유동화의 커다란 증가를 아직까지는 가져오지 못하였다. 물론 새로운 개념과 규제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금융기관 및 기업의 보수적인 성향, 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대 고객관계의 악화에 대한 우려,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규제의 계속적인 개선필요 등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고객관계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로 인하여 독일의 자산유동화는 중소기업의 채권(receivable)을 담보로 상업어음(CP)을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CP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은행간 경쟁의 심화, Euro의 등장으로 인한 투자계층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CLO의 발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CLO시장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주택저당증권(MBS)도 mortgage bond (Phandebrief)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그 시장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아직까지 성장이 미미하나 독일 자산유동화 시장의 장래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들어 자산유동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도
장래에 보다 활발해질
조짐이다.**

5. 일본

일본도 자산의 유동화가 크게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 증권회사들이 국제적으로 ABS와 MBS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증권회사들의 이윤율이 떨어짐에 따라 이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산업의 부실자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부실자산의 처리와 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이 중요한 현안 과제로 등장하는 등 자산유동화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기본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대출유동화는 1931년 저당증권법의 제정으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때의 법률적 기반은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전동의 및 허가를 받아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채권자가 배서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담보 부동산 평가의 부정확성이나 저당 부동산의 유동성 결여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그후 1980년대 금융자유화 이후 저당증권이 자유금리 상품이 되면서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주택저당증서제도는 민간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비중이 커짐에 따라 주택금

**일본에서는
1980년대 금융자유화
이후 저당증권이
자유금리 상품이 되면서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융의 원활화를 위하여 1974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이 동일조건의 부동산 담보대출채권을 집합하여 일정액의 주택저당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택저당증서는 증권거래법상 증권이 아닌 증거서류에 불과하여 양수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발행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적인 증권화는 주택론채권 신탁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주택자금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되었는데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대출채권을 일정기간 신탁은행에 신탁하고 신탁에 따른 수익증서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전에 한하던 위탁자 요건을 1988년 6월부터 도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유동화가 활성화되었다.

일반대출채권의 유동화는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대출증가 억제 지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되었는데, 1992년 12월 신탁방식에 의한 유동화제도가 여기에 속하며 1993년 6월에 특정채권법의 제정으로 리스·신용카드 수취금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1995년 6월에 대출분할매각거래(loan participation)를 도입하고 1996년 4월에는 증권화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추가되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한 상태로 1998년 3월 말 2,860억엔에 불과했다. 최근 들어 자산의 증권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불량채권 처리를 주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증권유동화에 치중함으로써 제약이 많고 실무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IV.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도입배경 및 현황

1. 자산유동화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한 작업은 1997년부터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IMF사태로 인하여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정리,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개선 필요성 증대, 투자자의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수요의 증가 등으로 유동화증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4월 14일 '금융, 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으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 촉진을

위하여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발표했다. 5월에 법률안 요강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IMF와의 2/4분기 협의 사항으로 외국의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법률제정작업을 구체화하였다. 별도의 '부동산 저당채권 담보부증권'의 유동화 문제도 이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통합되었는데 이는 총 42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택저당채권은 본질적으로 그 기간이 장기이며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전담할 중개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 법의 통과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는 유한회사와 신탁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별도의 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중개회사(주식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1998년 4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 촉진을 위하여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발표했다.

2. 자산유동화법의 개요

자산유동화의 방법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또는 배당금이나 수익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유한회사, 은행신탁을 포함한 신탁회사 그리고 외국법인으로 제한하며 자산보유자로는 은행·증권·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기관·성업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및 금감위가 인정하는 일반기업 등이 포함된다. 유동화증권은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대출채권, 주택저당채권, 할부금융채권 및 부동산 등이 주요 유동화 대상자산에 속한다.

자산유동화를 위한 첫 단계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금감위에 그 계획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제2단계는 자산양도 등의 등록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 등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단계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으로, 유동화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 총액 범위 내에서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저당권 취득에 관한 특례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경우 금감위에 등록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있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특례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가 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간소화하여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통지하여 반송된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지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하면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금감위에 등록할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인정하고 있다. 저당권 취득에 관한 특례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경우 금감위에 등록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성업공사·토지공사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는 이들 기관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하고 금감위에 등록할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조세감면규제법)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50%까지 감면(1999년 12월까지)해주고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저당권 이전 등기시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3. 현황

자산유동화법의 공포 이후 1998년 12월 30일 동양카드가 최초로 오리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하여 2,5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유동화하였으며 이때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사모방식으로 매출되었다. 물론 이에 앞서 성업공사가 2,000여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원금기준 5,646억원)을 근거로 유동화증권을 해외에 매각하였으나 이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는 아니었다. 동양카드의 뒤를 이어 삼성할부금융이 퍼스트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하여 자동차할부채권을 유동화하여 62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회사채를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했으며 최근에는 동양중금이 하나로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리스자산을 근거로 1230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 한편 한미은행, 현대캐피탈, 성업공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금감위에 등록을 한 상태이며 여러 주택할부금융회사 등도 곧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 그 외에도 현재 대출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자동차할부금융회사 및 신용카드회사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기업들이 동 제도를 이용한 자금조달

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 향후과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회계 기준의 정립과 조세체계의 개선이다. 특히 보다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정립과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 자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자산유동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현행 조세체계상의 요인들에 대한 파악과 이의 해결방안 그리고 자산유동화의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의 강구도 주요한 현안 정책과제라 하겠다.

현재 유동화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동화증권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 특히 유동화전문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자산보유자는 자산관리인·업무수탁인 등을 겸할 수 있으며 이들간에 어떠한 거래행위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채무자로부터 수취된 원리금이 자산보유자의 계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계정으로 지체없이 이체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업무처리시스템의 마련 등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규제원칙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현행법에서는 양도자산의 평가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신용평가관련 규정의 보완 및 강화가 요구되며 신용평가기관의 제도적인 육성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중개방법의 모색, 금리의 현실화, 채권 계약의 정형화 및 문서화, 신용위험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과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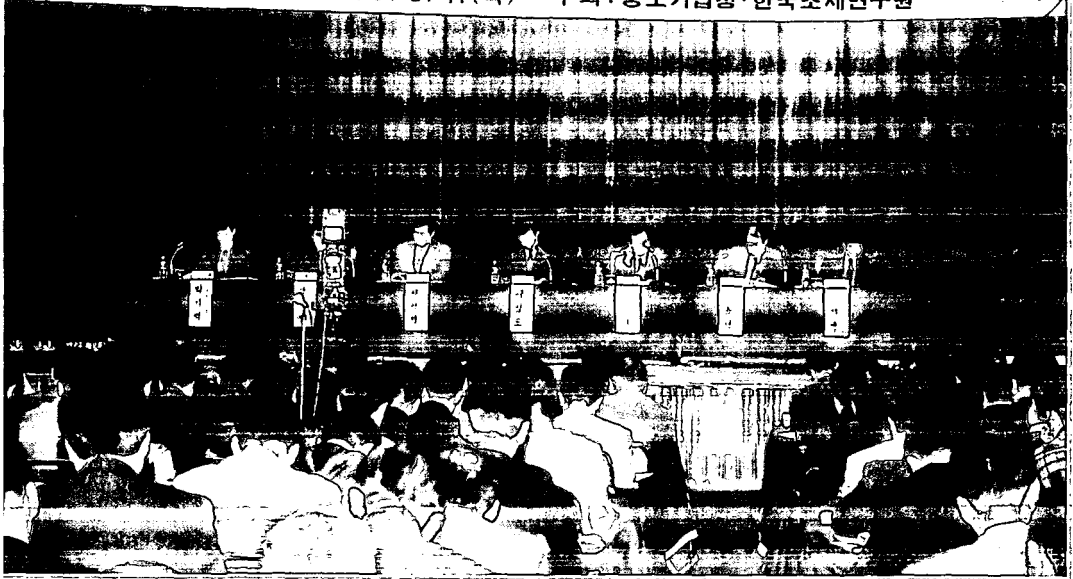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회계기준의 정립과
조세체계의 개선이다.**

참고문헌

- 신성환·배철호, 『우리나라 은행자산의 증권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1995.
- 윤승한, 『자산유동화의 이론과 실무』, 삼일세무정보주식회사, 1998.
- Bhattacharya, A. and Frank Fabozzi(eds.), *Asset Backed Securities*, Frank J. Fabozzi Associates, 1996.
- Euroweek*, various issues.
- Fabozzi, Frank and Franco Modigliani, *Mortgage and Mortgage-Backed Securities Market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2.
- Kendall, Leon and Michael Fishman, *A Primer on Securitization*, The MIT Press, 1996.
- OECD,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in Securitization*, DAFBE/CMF(98)30, 1998.
- Thompson, John K., *Securitiza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ECD, 1995. 

중소기업관련 조세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세미나

일시: 1999. 3. 11(목) 주최: 중소기업청·한국조세연구원



정책토론포트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편방향」

이 원고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3월 11일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세미나의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의 요약입니다.



주제발표 요약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 일반현황

金 裁 鎮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각 부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그 동안 정부 주도의 고도성장정책을 통해 달성한 각 부문의 양적 성장이 서로 유기적 관련성과 분업체제를 이루는 질적 성장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및 발전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과거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 결과 처하게 된 IMF 체제하의 경제적 난관들을 경제의 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함.
- 본 발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방안 중 하나인 조세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현 경제 여건하의 중소기업 동향 및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중소기업의 제도 이용실태를 검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IMF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 및 중소기업 동향

- 최근의 국내경제 동향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내수 위축으로 기업의 투자 및 산업활동이 둔화되었음.
- 1997년 이전까지는 5.5%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해 왔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GDP성장률이 급속히 저하되어 -5.3%까지 떨어짐. .
- 소비활동도 급속히 위축되어 총소비는 -12.0%, 도·소매판매는 -12.5%,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22.1%까지 감소하였음.
- 투자심리도 급랭하여 국내기계수주실적이 -30.9%로 하락
- 산업관련지표도 경기활동의 부진을 그대로 반영하여 산업생산이 -7.1%로 감소하였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67.2%로 떨어짐.
- 국제수지는 원화가치 하락에 의한 상대적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은 소폭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은 급격히 둔화되어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이는 제품경쟁력 신장에 의한 수출증대에 따른 흑자가 아님.
- 해외경제 동향 역시 전후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는 일본 및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처하면서 미국 및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및 교역신장률도 둔화가 예측되고 있음.

〈표 1〉 경제성장률 및 소비, 투자활동 추이

(단위: %)

		1995	1996	1997	1998p
GDP 성장률		8.9	7.1	5.5	-5.3 ¹⁾
소비	총소비	7.2	6.9	3.5	-12.0
	도소매 판매	8.0	7.0	3.2	-12.5
	내수용 소비재 출하 (내 구 재)	7.4	5.9	-1.5	-22.1
		10.6	5.9	5.0	-29.7
투자	국내기계수주	15.8	16.5	3.3	-30.9
	기계류 수입액	31.5	-0.7	-22.8	n.a
	건축허가면적	1.0	-3.0	-0.4	-55.1
	설비투자 증가율	-	17.9	-2.1	n.a

주 : 1) 통계청 발표, 1998. 3/4분기 데이터.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매월호.
 통계청, 『조사통계월보』, 각 연도.
 한국은행, 『한국주요경제지표』, 1998. 3.

〈표 2〉 산업활동 관련지표

(단위: %)

	1995	1996	1997	1998
산업생산*	12.0	7.3	6.9	-7.1
출하*	12.6	7.6	5.0	-9.1
(내수용)	10.9	6.9	1.0	-24.1
(수출용)	20.3	9.7	16.1	27.1
재고*	12.6	14.7	5.3	-17.1
제조업 평균가동률	82.4	81.8	79.9	67.2

주 : * 항목은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한국주요경제지표』, 1998. 3.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999. 1.

○ 이러한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 경색 및 내수 위축으로 우리 중소기업은 기업 채산성 및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부도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기업의 채산성 및 경영여건 판단지표' 라

할 수 있는 생산·판매·정상조업률·설비투자 실적 및 자금조달 원천의 비중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1997년 들어 마이너스 증가율(-1.4%)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1998년



〈표 3〉 국제수지

(단위: %, 억달러)

	1995	1996	1997	1998
경상수지	-85	-230	-82	372
상품수지	-44	-150	-31	399
수출	1,246 (24)	1,300 (4)	1,386 (-2)	1,322 (-2.2)
수입	1,291 (24)	1,450 (11)	1,418 (-2)	933 (-35.4)

주: 1998개편 국제수지임. 과거의 무역수지 대신 상품수지 이용.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 1999. 1; 재정경제부, 『산업활동동향』, 1999. 2.

〈표 4〉 세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1997			1998			1999		
	IMF	OECD	DRI	IMF	OECD	DRI	IMF	OECD	DRI
세계경제	4.1	-	-	2.0	-	1.7(1.0)	2.5	-	1.9(1.6)
주요 선진국	3.1	2.8	-	2.0	2.1	-	1.9	2.1	-
미국	3.9	3.8	3.8	3.5	2.7	2.8	2.0	2.1	1.7
영국	3.4	3.3	3.6	2.3	1.7	2	1.2	1.8	2.4
독일	2.2	2.2	2.3	2.6	2.7	2.3	2.5	2.9	2.2
일본	0.8	0.9	0.6	-2.5	-0.3	0.7	0.5	1.3	1.2
EU	1.7	2.6	-	2.6	2.7	-	2.8	2.8	-
아시아									
한국	5.5	5.5	5.5	-7.0	-0.2	-6.7	-1.0	4.0	1
대만	6.9	-	6	4.0	-	6.2	3.9	-	5.9
홍콩	5.3	-	5.2	-5.0	-	-4	0.0	-	0.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5.
 OECD, *Economic Outlook*, 1998. 6.
 S&P's DRI, *World Economic Outlook*, Vol. 2, 1998.

에는 전년대비 29.0%나 감소하였음¹⁾.
 • 판매가격지수 변동폭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를 생산지수와 함께 생각해 보면 중소기업의 제품가격은 큰 변동 없이 생산만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기업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냄²⁾.
 • 또한 생산 증가의 기반이 되는 설비투자 실적의 급속한 하락과 1998년 들어 65~75%대로 떨어

〈표 5〉 세계 교역신장률

(단위: %)

교역 내용	국가 유형	1996	1997	1998	1999p
교역신장률	전세계	6.8	9.7	3.7	4.6
수 출	선진국	6.0	10.3	3.6	4.2
	개발도상국 ¹⁾	10.9	3.9	4.8	5.5
	체제전환국 ²⁾	7.0	6.9	5.3	5.9
수 입	선진국	6.4	9.0	4.5	4.7
	개발도상국	9.3	9.8	1.0	4.6
	체제전환국	10.0	8.2	3.5	3.5

주 : 1) 아시아 신흥공업국가(태국, 인도네시아 및 홍콩 등) 및 중남미 국가.

2) 시장경제의 정착을 추구하는 동구 시장경제 전환국들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포함(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10.

〈표 6〉 중소기업 생산 추이

	1995	1996	1997	1998p
생산지수 ¹⁾	100.0	103.3	101.9	72.4
	-	(3.2) ²⁾	(-1.4)	(-29.0)
판매가격지수 ¹⁾	100.0	101.2	101.4	101.0
	-	(1)	(0)	(0.5)
설비투자실적	65,128	64,810	50,087	18,746
	(11.4)	(-0.5)	(-22.7)	(-62.6)
정상조업률 ³⁾	84.7	84.8	83.6	-

주 : 1) 지수는 1995=100을 기준으로 하며, 판매가격지수 1998년 데이터는 1998년 10월분 지수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3) 정상조업률 1998년 1/4분기는 75%, 2/4분기는 65%임.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통계』, 1998, 7.

진 조업률을 통해서도 중소기업 경기현황의 침체를 짐작할 수 있음.

- 1) 이는 중소제조업체의 부도 증가, 생산시설 가동을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달러 강세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현상의 결과이다.
- 2) 경제여건이 생산비용 증대를 초래하여 판매가격 상승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내수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현재의 수요 감소 및 판매 부진을 더욱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판매가격지수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소요자금 조달원천

(단위: 억원, %)

	1995	1996	1997	1998
계	65,128 (100.0)	64,810 (100.0)	50,087 (100.0)	18,746 (100.0)
자기자금	24,791 (38.1)	24,698 (38.1)	19,283 (38.5)	9,279 (49.5)
금융기관	37,632 (57.8)	37,411 (57.7)	27,998 (55.9)	8,320 (44.4)
회사채	362 (0.6)	330 (0.5)	686 (1.4)	106 (0.6)
사채	547 (0.8)	813 (1.3)	126 (0.3)	93 (0.5)
기타	1,797 (2.8)	1,559 (2.4)	1,994 (4.0)	947 (5.1)

주 : 1) () 안은 구성비임.

2) 1998년은 전망치임.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통계』, 1998. 7.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도 고금리와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기자금의 비중은 높은 반면, 금융기관에 의한 간접금융 조달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이처럼 생산 및 판매 부진, 금융경색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은 기업의 채산성 및 경영 여건을 매우 악화시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부도를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부도업체 수도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며, 1998년의 경우 2/4분기에 이미 1997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이는 IMF 이후 중소기업경영 여건의 악화와 금융시스템의 기능 마비로 인해 건전한 기업마저도 자금난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과임.
- 1998년 하반기에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의 확산과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한 대내적 요인과 세계경기침체 등 대외적 요인이 맞물려 수요 진작에 의한 생산증대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임.

III. 중소기업의 역할

- 시대별·국가별 경제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바로 중소기업 역할 논의의 전제가 됨.

〈표 8〉 중소기업 부도업체 수

(단위: 개, %)

	1995	1996	1997	1998
제조업	3,553 (25.4)	3,855 (33)	6,856 (40)	8,638 (37.8)
건설업	1,751 (12.5)	1,544 (13.3)	2,472 (14.3)	3,413 (15.0)
도·소매업/숙박업	3,326 (23.7)	2,992 (25.8)	5,000 (29.1)	6,971 (30.5)
기타	5,362 (38.3)	3,198 (27.6)	2,840 (29.1)	3,806 (16.7)
전체 부도업체 수	13,992	11,589	17,168	22,828

주 : () 안은 총부도업체 수에 대한 업종별 부도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매월호.

- 중소기업 문제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각 나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결과임.
- 따라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국가적 특수성에 따라 전개된 중소기업이론을 통하여 고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국가의 중소기업 역할 및 위상도 살펴볼 수 있음.

1. 중소기업에 관한 이론들

- 중소기업이론은 1930년대를 기점으로 구분되며, 이는 동 기간에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특성이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며, 국가적 특수성에 따른 이론 전개는 193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음.

- 영국에서 발전한 「중소기업 비합리성론」은 대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없고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성 및 이윤율이 낮아 경영이 불안정하고 사멸의 위기에 있는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제도의 바람직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존존하게 된다고 주장.

-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존존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중소기업 합리성론」이 대두되었는데, 대공황의 원인을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구했기 때문에 자유기업경쟁제도의 위기에 직면한 경제적 모순이 중소기업문제로 인식됨.

- 일본에서는 정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이중구조 문제를 중소기업문제로 인식하면서 「이중구조론」이 대두됨.

- 이종구조란 한편에는 근대적 대기업이, 다른 한편에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에 입각한 소기업 및 가족경영에 의한 영세 기업과 농업이 양극에 존립하여, 한 나라 안에 선진국적 경제구조와 후진국적 경제구조가 병존하여 국민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이종구조 속의 중소기업은 일본경제의 성장·순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경제적 모순으로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인식이 요구되었음.

2. 중소기업 역할에 대한 각국의 인식

- 미국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의 집중도를 낮춤으로써 시장이 독과점화되는 폐해를 막고 경직화되어 가는 시장구조와 자본주의 체제에 「활력을 넣어 주는 多數」가 되어 자본주의에 대한 체제유지적 역할을 한다고 인식함.
- 동시에 중소기업이 경제에 공급하는 활력은 거대기업체제와 금융과두체제 등 독과점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경제에 경제 재활성화와 재건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 준다고 봄.
- 영국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합리성과 능률성을 존중하여 중소기업이 열등할 때는 고능률의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며, 다만 경쟁에 있어 중소기업이 불리한 조건에 처했을 경우에 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그러나 1960년대 중소기업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이루어짐.

- 즉, 중소기업을 개별 기업단위의 능률성이라는 영국형 산업조직론의 틀을 넘어,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인 독과점체제에서 오는 폐해와 경제의 경직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 강조됨.
- 따라서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苗床機能」과 「新陳代謝的 機能」이 강조됨.
- 일본은 과거 이종구조론에 의해 중소기업을 「저렴한 노동에 의한 낮은 비용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기업군」으로 인식하였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비하여 생산성과 임금수준의 격차를 지닌 일본경제의 특수한 영역으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그러나 1970~1980년대에 들어 가속화된 내외의 여러 정세의 변화로 인해 이종구조 해소라는 구조론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 국제화에 대응한 구조변동을 위하여 「활력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됨.
- 「활력있는 다수론」은 독과점 체제의 폐해와 경직화의 제거라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중소기업 역할론과는 달리 국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구조개혁을 위한 활력 있는 중소기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이 각종의 사회적 분업관계를 형성하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지역경제구조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산업의 지리적 분산을 촉진시켜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토개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됨.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변천과 역할

- 1950년대의 중소기업대책은 주로 도산방지를 위한 산발적 금융지원대책에 그쳐 사회 보호적·경기 대책적 입장이 주류를 이룸.
- 1960~1970년대에는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이 진전되는 등 큰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대한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대상이라는 소극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였음.
- 1980년대 들어 중소기업이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라는 문제형 인식이 약화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받쳐주는 지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는 공헌형 인식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정책수립에도 이러한 시각변화가 반영됨.
- 이러한 공헌형 인식론은 1990년대 들어 기업환경 변화가 갈수록 불안정·가속화되고 심지어 혁명적인 양상을 띠게 되면서 더욱 강조되었음.
-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 시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중소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할 및 위상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아직까지도 산업정책에 있어서 대기업 위주의 시각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산업정책 수립시, 상위개념인 기본방향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하위개념인 산업조직 효율화의 측면에서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나,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창업환경의 조성 및 소재 부품산업의 육성 등과 같은 세부실천 항목에서만 취급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임.

4.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위상 정립

- 시장기호의 고급화 및 다양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환경 변화로 기업의 글로벌경영이 보편화됨에 따라 기업간·국가간의 수직적·수평적 분업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강조되었고, 각 국가별로 경제성장수단으로서의 중소기업역할에 대한 위상이 재정립됨.

IV.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제도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관련 조세지원은 분야별로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관세지원 및 기타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9〉 중소기업 주요 조세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중소기업 일반	-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 증자소득 공제, 세액공제 이월, 대손세액 및 재고매입세액공제, 중소기업출자자금 출처조사 면제
	· 장외등록 중소기업	- 장외등록 전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영세 중소기업	- 사업소세 면제
	· 조세감면법상의 중소기업	- 최저한세 우대, 결손금 소급공제, 접대비·기밀비의 손비 인정
	· 중소제조업	- 소득세, 법인세 세액 감면 및 농어촌 특별세 전액 감면 -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벤처기업 직접시설 입주기업	- 대도시내 입주한 기업에 부과하는 지방세 5배 종과 배제
	· 지역신용보증조합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 산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창업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 법인세, 소득세 감면, 인지세 면제
	· 농어촌 지역 창업중소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및 농특세 감면
창업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	· 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특례인정, 지방세 종과세 예외
	·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기관 및 개인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출자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벤처기 업 및 출자자	- 출자액의 20% 소득공제 - 출자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투자촉진에 대한 지원	· 생산성 향상시설, 근로자 복지증 진 설비 및 특정설비, 사업용 자 산 취득 중소기업	- 세액공제
	· 조감법상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시설	- 투자준비금 손금 산입
	· 일반투자	- 임시투자세액공제(1999. 6. 30까지 투자한 중소기업의 모든 시설)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 제조업, 광업, 기타 산업	- 기술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세액공제
	· 설비투자	- 투자세액공제
	· 기술이전소득	- 세액감면
	· 창업투자회사	- 법인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외국인 기술자	- 소득세 면제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 소득공제
	·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용품	- 관세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 지방세(재산세 및 종토세) 면제

〈표 9〉의 계속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산업 구조조정	·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전환 중소기업	-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법인세·소득세 감면
	· 조감법상의 법인	-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특세 감면, 자산증여시 소득금액에 불산입
	· 구조조정 대상의 중소기업	-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부동산업, 건설업 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한 자	- 특별부가세 면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지방이전 중소기업	- 세액감면
	· 법인 및 공장 지방이전 기업	- 준비금 손금산입,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투자세액공제, 취득세·등록세 면제
	· 농공단지 입주기업	- 세액감면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경감
	·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경감,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액 면제
· 재래사업장 이전 중소 사업자	- 양도소득세 감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대기업 또는 타중소기업의 시설 비용	- 중소기업 기술·인력개발비용,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비용,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지원설비 및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관세지원	· 일반 중소기업	- 원활한 물자수급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및 수입억제가 요구되는 수입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 직접 사용할 수입물품 및 시설에 대한 관세의 분할납부
	· 국내제작이 곤란한 다양한 설비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설비 및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 설비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 관세감면
기타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진흥기금	-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68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 신용카드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V. 주요국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 일본

받는 대상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조치와 개별법에 근거한 조치로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음.

○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세제는 세제우대를 적용



가. 일반적 조치

지원대상	지원내용
개인사업자	- 소득세: 소득공제, 사업전업종사자급여(공제) - 지방세: 주민세 및 사업세의 사업전업종사자급여(공제), 사업세의 사업주 공제
중소규모의 법인사업자	- 법인세 및 법인사업세 경감세율적용, 법인주민세의 균등할 경감, 인지세 비과세, 지방세인 사업세 및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및 비과세
일 반 중소기업자	- 소비세의 간이과세제도 시행 -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상각 및 세액공제
사업승계 도모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택지 평가감액률을 상향조정 - 비상장회사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방식과 유사업종비율방식 중 선택 가능

나. 개별 법률

지원제도	지원내용	관련조치
「중소기업근대화 촉진법」	- '중소기업의 설비근대화와 기업집약화' 를 목표	세액공제, 설비투자를 위한 특례조치, 시험연구비 부과금의 임의상각, 부과금에 의해 취득한 시험연구용 자산의 압축기 장, 특별소비세 및 사업소세 비과세
「중소기업 창조 활동촉진법」	-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 성과의 사업화 지원' 을 목표	
기타 법률 ¹⁾	- '영세기업 및 특정산업의 활성화' 를 목적으로 함.	

주: 1) 「하청중소기업 진흥법」, 「특정산업 집적활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의미.

2. 미국

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세금우대

지원제도	지원내용
「내국세법」(1978)	- 법인소득세를 소득범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도모
「경제회복세법」(1981)	-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시험연구비공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982)	- 첨단기술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지출권이 있는 정부기관이 자금지원
「예산일괄조정법」(1989)	- 창업기업과 신분야 개척에 관련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공제의 3년간 소급적용 및 15년간 연장

나.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지원대상	지원내용
S법인 제도	- 소규모 법인에게 비과세하고, 대신 해당법인 손익을 개인주주에게 출자비율별로 배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개인은 소득과 출자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산하여 절세하는 효과가 있음.
개인투자자	- 미공개 중소기업의 주식 매각손을 통산소득과 합산할 수 있음. - 적격 중소기업의 주식보유에 따른 주식매각익의 비과세혜택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특별중소기업투자회사(SSBIC)	- 주식매각익의 과세경감, 주식매각손과 통산소득 합산, - 주식매각익의 과세이연

3. 영국

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사업자 (30만파운드 미만의 소득법인)	- 21%의 경감세율을 적용받음. 30만~150만파운드 법인은 21% 이상의 슬라이드 세율이, 150만 파운드 이상의 법인은 31% 세율이 적용
중소사업자 (3만 5천파운드 미만 매출액)	-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없음

나.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미공개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우대제도(1979)	- 미공개기업 투자한 개인주주의 주식 매각손과 통산소득 합산, 개인투자자의 신규주식투자 소득공제
BIS(Business Start-Up Scheme)(1981)	- 개인투자자가 적격기업에 대하여 주식투자할 경우 연간 1만파운드까지 소득공제
BES(Business Expansion Scheme)(1983)	-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에 대해 연간 4만파운드까지 소득공제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1994)	-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에 대해 연간 10만파운드까지 세액공제, 보유주식 매각익 비과세, 주식매각손과 통산소득 합산, 주식매각익 과세연기
VCT(Venture Capital Trust) (1995)	- 미공개기업에 투자하는 회사형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매각익과 통산소득 합산, 주식처분에 따른 매각익 과세연기 가능



4. 독일

지원대상	지원내용
「입지보전법」(1993)	- 독일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유보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50%, 배당이익에 대하여는 36%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각각 45%, 30%로 인하
법인주주	- 설비자산의 신규구입 및 생산에 투자한 경우, 연간투자금액 100만마르크까지 세액공제
인적회사 및 공유회사	- 1991. 1. 1~1996. 12. 31에 지출한 자재구입비용 및 부품의 제조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5. 프랑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기업	- EU 통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부가가치세의 할증세율을 폐지
신규설립기업	- 설립 후 23개월간 법인세 비과세 및 설립 후 3년까지 세액공제

6. 대만

- 대만정부는 특히 벤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벤처캐피탈 회사와 개인 및 법인투자자에 대해 조세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내용
「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 벤처캐피탈 회사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면제 및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액수 만큼 국내 세액을 공제,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적용, 증권거래에 의한 자본이득 비과세 - 증권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산업투자 촉진법」(1990)	- 벤처캐피탈 회사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은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및 공제액 이월이 가능하며, 배당주식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됨, 일반영리법인이 타회사에 투자할 경우 납입자본의 40%까지만 허용하나 벤처캐피탈회사에 투자할 경우 이 조항의 적용 배제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朴 壽 白/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조세지원 방향

1. 지원 논리

-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데 있음³⁾.
-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는 약자를 대기업이라는 강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을 양산하여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세·금융지원이 기업의 의존성과 타성을 심화시켜 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형평성과 시장 실패의 교정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논리가 존재함.

2. 자금조달 비용

- 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높은 비용을 지

불하고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움.
-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의 경우에도 신용이 아닌 담보를 제공해야 함.

3. 신용경색

- IMF의 금융지원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되거나 부분 대출만 해주는 경우가 80%를 상회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통화공급이 확대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신용경색의 문제는 남아 있음.
- 그러나 신용경색이 장기적 상황이 아니므로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지원은 금융 성격을 띤 사전적 지원 위주로 행해져야 하며 단기적·한시적이어야 함.

4. 기술 및 벤처기업

-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대표적인 중소기업인 벤처기업도 사회적 최적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짐.
- 소비자 잉여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벤처기업에

3) 김일중(1997)은 강자의 횡포에 해당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며 단순한 약자 보호 정책은 약자의 처지를 항구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피보호자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피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 측이 보호대상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으로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법의 변화가 바람직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속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물류 현대화, 창업 및 금융에 있어서의 금융 및 세제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10〉 자금조달 비중 비교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내부금융	25.8 (35.1)	33.7 (43.4)	37.9 (56.0)	34.3 (43.9)	36.8 (45.7)	42.1 (32.5)	28.8 (20.8)
외부금융	74.2 (64.9)	66.3 (56.6)	62.1 (44.0)	65.7 (56.1)	63.2 (54.3)	58.0 (67.6)	71.2 (79.2)
직접금융	9.0 (16.0)	8.1 (10.8)	7.8 (21.4)	4.4 (13.9)	4.9 (9.9)	8.3 (18.4)	6.3 (12.7)
간접금융	37.1 (29.1)	46.2 (34.9)	29.8 (13.8)	23.3 (18.5)	29.9 (27.3)	35.9 (38.3)	48.1 (52.7)
매입채무	14.8 (9.2)	6.6 (4.9)	16.5 (-1.5)	24.2 (8.1)	16.8 (4.6)	8.6 (5.8)	8.9 (6.8)
기타	13.3 (10.6)	5.4 (6.2)	8.0 (10.3)	13.9 (15.7)	11.6 (12.5)	5.2 (5.0)	7.9 (7.1)

주: () 안의 수치는 대기업에 관한 통계치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표 11〉 최근 중소기업의 신규대출 사정

(단위: %)

	전면중단	부분대출	원활	기타
전체	62.4	17.3	7.8	12.5
20인 미만	60.8	14.9	7.5	16.8
21~50인 이하	65.6	14.6	9.2	10.6
51~100인 이하	60.3	18.6	8.1	13.0
101~200인 이하	62.1	18.4	5.7	13.8
200인 초과	51.4	37.1	2.9	8.6

자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1998.

대한 투자가 사회적 최적보다 적을 수 있음.

5. 기타

- 또한 고위험성,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자금조달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시장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품시장에서도 발생하여 중소기업이 불리한 환경에

- 놓이는 경우가 있음.
- 시장의 불완전성은 독과점과 같은 시장의 구조에서 파생되기도 하고, 불공정거래와 같은 거래행태에서 발생하기도 함.
- 시장의 불완전성이 법과 제도로 완전히 해소될 수 없으므로 세제 지원의 논리적 기반은 존재함.

-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시점은 상황을 고려해야 함.
- 창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지원보다 사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임.
-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지원의 경우에는 사후적 지원이 적합함.

II. 조세지원 점검사항

- 먼저 조세지원 부문을 살펴보아야 함.
- 조세지원에 대한 논리에 따르면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지원이 행해져야 하는 부문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 필요한 부문이 존재함.
- 현행 세제로 인한 세제혜택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소득(비용)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크기가 대기업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많음.
- 조세지원제도의 현실적인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준비금, 특별상각 등 간접지원제도는 가장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 조세지원의 강도는 해당 지출의 외부효과에 따라 달라지게 됨.
- 정확한 외부효과 크기를 측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조세감면 규모의 추이, 개별 조세감면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
- 조세지원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손실과 유인된 투자의 크기를 살펴보아야 함.
- 중소기업의 창업, 투자 등이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의 방식이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기금 등을 조성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⁴⁾.
-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나면 조세지원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4)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금액(v)에 대해 s 원씩 세금을 되돌려 주며 세입(r)을 바탕으로 기금 출연처럼 중소기업에 재정지출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g = -sv + r = -(1-p)v + r$ (p 는 투자의 상대가격). 그리고 정부가 조세지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예산만큼 직접지원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예산제약식을 전미분한 값은 0이 된다. $dg = vdp + pdv - dv + dr = 0$. 다음에 조세지원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의 탄력성을 $\eta = -pdv/vdp$ 라고 정의하면 $dr = dv + (\eta - 1)vdp$ 가 된다. 따라서 투자의 탄력성이 1이면 정부의 직접지출을 통한 투자증가분과 조세지원을 통한 투자증가분이 같게 된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조세지원을 강화하였을 경우 ($dp < 0$), 유인된 투자가 정부가 직접 지출해야 할 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dr < dv$). 따라서 탄력성이 1보다 커야 조세지원이 바람직하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조세지원보다 직접 지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III.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1. 설문조사 결과

- 현행 각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중소기업지원 세제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 활용도가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음.
 - 세액감면제도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38.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5.8%)'.
 -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1.2%)',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9%)',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6.4%)'.
 - 간접지원인 준비금제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16.5%)',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9.2%)'.

- 지원대상이 포괄적인 것은 활용도가 높게, 지원대상이 한정적인 것은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 가장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준비금제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선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제측면에서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감면을 또는 감면기간 확대(18.9%)', '최저한세 완화(11.6%)' 등임.
 - 세정 측면에서는 '감면요건의 완화(35.8%)',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24.5%)', '감면에 따른 세무간섭 배제(23.8%)', '교육·홍보 강화(21.5%)' 등임.

2. 기본 방향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일반적 지원과 특정분야 지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일반적 지원은 소득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사후적 지원이 적합함.
 - 예를 들어 이중세율구조를 통한 저율과세,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 그것임.
 - 반면 기술개발, 창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실효성이 있는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조세지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지원의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나타나고 있음.

〈표 12〉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선점

(단위: %)

구 분	비 율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48.7
감면요건의 완화	35.8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	24.5
감면에 따른 세무간섭 배제	23.8
지원제도 이용에 관한 교육 강화	21.5
감면을 또는 감면기간의 확대	18.9
최저한세 등 완화	11.6

주: 조사대상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세제에 대한 복수응답 허용.

- 또한 조세지원의 종류가 다양하면 수혜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행정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됨.
- 그리고 국제적 규범에 맞도록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할 필요성도 있음.
- 최근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다소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의 세제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세제지원은 신용경색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3. 중소기업 일반

- 소기업 특별세제의 도입
-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세수여건, 최저한세 세율 등을 감안하여 5~10%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

용하는 대신 여타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⁵⁾.

- 소기업은 생성과 소멸이 잦고, 기장능력이 부족하므로 간접지원제도를 활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기능별로 지원되는 세제 혜택을 향유하기도 어려움.
- 다만 창업관련 조세지원은 예외로 함으로써 창업에 있어서의 세제상 형평성은 유지하여 세제가 창업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 확대
-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 여타 감면을 향유하지 못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최저한세가 소득 규모가 작은 경우 8%인 점을 감안하면 8% 이하가 적합한 세율일 것으로 보인다.

- 제조업이 여타 업종에 비해 외부효과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제조물품에 관계없이 모든 제조업이 육성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중소기업이 여타 업종에 비해 특별히 영세하다고 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감면 대상업종에 광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을 추가하여 조감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특별 세액감면과 여타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은 매년 중소기업이 사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최저한세 조정

- 최저한세는 세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감면 이전에 부담해야 할 세금의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함⁶⁾.
- 법인세율이 1993년 이후 점진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세율은 인하되지 않음으로써 조세감면의 상대적 효과가 감소하고 있음.
- 특히, 낮은 세율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함.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1990년 초반에는 최대 8%의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4%에 불과함.
- 법인세율이 향후 변동하여도 최저한세의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부과된 세금의 절반은 부담

한다는 원칙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음.

○ 간접지원 축소 및 직접지원 강화

- 조세감면규제법에 산재되어 있는 준비금과 특별상각제도는 가능한 한 축소하고 직접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기업의 경우에는 간접지원이 직접지원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특정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조업과 여타 업종간 차별 축소

- 조세지원제도는 기능만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히 제한해야 할 업종(예: 유흥업)을 제외하고 업종에 대한 제한은 가능한 한 없어야 함.
-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하고, 제조업과 비제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4. 분야별·기능별 지원

○ 창업중소기업 지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창업 자체의 활성화에 정책의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6) 현재의 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파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세율이 8%,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14%이다.

- 또한 사후적 지원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후적 지원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보다 사전적 지원인 등록세, 취득세 등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축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 감축이 문제가 되므로 해당 감축분은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합당함.
- 왜냐하면 창업의 활성화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증가는 중앙정부로 귀속되지 지방정부에는 귀속되지 않고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과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 수입의 증가가 있기 때문임.

○ 엔젤제도의 도입

- 벤처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자금의 공급자에게 집중하고, 자금의 공급자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엔젤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조합에 위탁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⁷⁾.

○ 설비투자

- 설비투자 지원의 대상은 외부효과가 있는 분야로 한정하여야 함.
- 공해방지시설 투자, 에너지 절약시설, 기술 및 인력개발관련 사실 등 외부효과가 있는 분야는

조세지원을 함.

- 반면 외부효과가 없는 첨단설비, 노후설비개체, 생산성 향상 시설 등은 별도의 세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음.

○ 기술 및 인력개발

-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부문이며 향후 산업발전의 기초가 기술 및 연구개발인 점을 감안하면 기술과 관련된 조세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술개발과 관련된 세제지원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대신 여타 활용이 저조한 조세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직접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준비금제도는 기술인력비 세액공제나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로 흡수하고 세액공제의 비율을 높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세액공제의 공제비율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공제비율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본재 산업의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여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함.

7)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8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각종 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다만 벤처기업 투자 후 5년 동안 지분을 양도하지 않아야 하고, 투자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해결하여 세제가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조세지원제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대상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님.
- 예를 들어 합병, 분할, 통합 등 조직 변경에 따른 자산 양도행위 등은 기업의 중국적 이익실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 예를 들어 분사나 빅딜(big deal)과 같은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도 조세가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합당함.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기자본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와 타인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기업간 배당의 이중과세 조정, 배당의 부분적 손금산입, 증자소득공제의 강화(적용 대상 및 공제율 확대),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증진을 위한 조세지원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외부경제를 가질 수 있는 기술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지도 및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여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원에 대해 세액공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저가로 양도한 설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합하게끔 세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증여에 대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보다는 과세이연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현행처럼 무상 이전을 받는 기업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한다면 저가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에 합당하는 세제지원이 있어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함.

○ 경영안정

- 실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은 당해 회계연도에 대손상계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손금액을 회수할 경우 세액가산(부가세법 제 17조의 2) 및 익금산입(법인세법시행령 제 20 조)토록 규정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며 사업자는 단지 납세를 대행하는 데 불과하므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는 없어야 함.
-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애로를 감안할 때 세무행정 비용의 증가나 법률해석의 문제보다는 기업의 경영안정이 더욱 중요함.
-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감안하면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기업과의 형평을 생각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일시적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 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표 13〉 조세지원제도 개편 방안

기준	대상/부문	조세지원 내용	비고
형평성	소기업	- 최저한세 수준 세율 적용	- 현행 기준 8% 여타 감면 제외
	중기업	- 특별세액감면 범위·대상 확대 - 소급 공제제도 - 최저한세 - 간접지원 축소·직접지원 강화 - 제조업과 여타 업종간 차별 폐지	- 특별세액 감면과 여타 감면 중 선택 - 세부담의 50% - 유흥업 등 특정부문 제외
효율성	창업기업	-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제한 폐지 - 사전적 감면(등록·취득 위주) - 엔젤 지원	- 지방세 부족분 보충
	설비투자	- 특정 설비투자 - 준비금제도와 세액공제 중 선택 방식	- 외부효과가 있는 부문만 첨단·노후·생산성 향상설비 제외
	기술·인력개발	- 범위·대상 확대 - 준비금제도 폐지 및 세액공제 강화	- 중소기업재 소득공제제도 폐지
	구조조정	- 구조조정의 걸림돌 제거 - 자기자본 세제지원 강화 및 타인자본 과세 강화	- 분사·빅딜의 경우도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강화	- 기술, 연구개발 분야 집중 - 설비이전 지원 - 무상이전·저가이전간 형평성 확보	- 과세이연
	경영안정 (한시적)	- 대손처리제도 개선 - 분할 납부, 납부기한 연장	- 부도 발생시 - 관세·법인세 - 대기업도 형평에 맞게 조정



토·론·요·약

시장협소 및 자금순환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야

신영섭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이슈는 본 세미나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지원이 아닌 시장 협소 및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영업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의 원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그 밖의 세금감면, 세액공제 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1998년 세계개편방향은 형평과세 및 세입확충을 위한 과표현실화 및 세원포착률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거래 실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 세제지원방향과 1998년 세계개편방향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음의 조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① 부가가치세율 인하 : IMF 이후 시장이 더욱 협소해지고 어음거래가 위축되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 폐지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②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의 축소 : 냉장고, TV 등 생활필수품인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판단되며, 그 동안 세정당국에서 세수 감소 때문에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③ 목적세 폐지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등 지출효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특별회계 목적세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④ 준조세 정비 : 중소기업 입장에서 준조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가지 예로,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이전에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2.3% 정도인데, 이 중 신용카드회사의 수입은 이 수수료율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며, 나머지는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구분된 카드조회비 명목 등으로 지출된다. 따라서 '규모의 불경제'를 초래하며, 불합리하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나누어 먹는 식의 구조적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세제지원방안 역시 다음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첫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기술, 인력, 자금면에서 지원하는 기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 특히 세액공제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 역시 타당하다. 중소기업이 효과적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창업단계이며, 그 이후에는 기업의 영업능력 및 자금순환의 원활화 등의 외부변수에 의해 정부의 세제지원 시책의 효율성이 결정된다. 특히 지역별·분야별로 제한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보다 창업 자체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실업자 증대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사후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확실한 세제혜택이다. 넷째, 수만 많고 비효율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것만 운용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장도 못하고 있는 소기업에 준비금 제도 등은 쓸모 없는 지원책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세제지원 남발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세제의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도입은 외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가 세제지원 기준되어야

이종천 / 숭실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대기업 중심 성장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 대기업 성장의 둔화가 예상된다. 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최근 들어 한층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의 원인으로 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용이 확실치 않으므로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는 것을, 정부는 세수 확보차원에서 세제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신용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관건이며, 앞으로 정부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인은 발표자와 다음 사항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첫째, 발표자가 주장한 기장세액공제보다는 과감한 경영 투명성 세액공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외부감사를 위한 인증비용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며 이는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때 정부는 경영 투명성이 확보된 기업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을 실시하고, 은행 역시 투명성이 확보된 중소기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융통성 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원논리가 필요하다. 즉 중소기업은 자본 및 기술 면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세제지원의 초점은 무엇보다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효율성 개선에 맞추어져야 하며, 이러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국가 및 사회적 부의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투자 및 기술투자 등 외부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제공하자는 발표자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경영 투명성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의 모든 투자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야 하며, 이러한 세액 감면이 투자 및 시설관련 준비금으로 유보되어 기업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초래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신용이 개


선되며,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高)자본 비용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즉, 시설 및 기술에 대한 준비금을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기술력, 투자부문 등 기업 전반에 걸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발표 내용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면제이익을 3년 거치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융통성이 요구된다. 즉, 기업구조조정을 당하는 기업들은 지급능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구조조정 협약단계에서 상환기간을 결정하며, 이 기간 내에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월결손금 승계의 대폭적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손금이 누적되어 기업이 도산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보다는 결손금의 일정요건을 완화하여, 도산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 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경비처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문제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중빙서류인 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제는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의 영세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다섯째,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을 투자가 해당기업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는 즉, 경영투명성이 확보된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세액공제혜택은 일반투자자의 직접 투자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해 필요하며, 높은 부채비율이 대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으로 입증된 현 경제상황을 통해 직접자본 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게 자본구조를 충실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현행 20% 투자세액 공제율을 보다 높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소규모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조세혜택제도는 기존의 성실신고자의 사기 저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여덟째, 중소기업이 거래 누락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음성적 지출을 상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동시에 음성적 지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표양성화 기업에 대해 기밀비, 접대비 한도를 확대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세계 수준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조세지원의 형평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의 조세(II) -

그동안 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던
<한국조세의 이해>가 끝나고 1999년 3월호부터는 주요 외국의 조세제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국의 조세제도>가 연계됩니다. <편집자 주>

申基銑 /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3. 법인세

가. 납세의무자

일본의 법인세법에서는 각종 법인의 형태를 먼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다.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법인은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내국법인은 다시 보통법인,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 협동조합 등, 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 분류된다. 보통법인이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상호회사 등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공공법인이란 지방공공단체, 공사, 공단, 공고 등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은 학교법인, 사

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공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사업단 등으로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과세된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현재 33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협동조합 등은 농협(農協), 어협(漁協) 등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인격 없는 사단 등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해 과세된다.

나. 과세소득계산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과 기업회계상의 결산이익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에서의 결산이익은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인 반면,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은 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상의 결산이익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이익의 산

출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이익을 기초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차이를 조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익금(손금)산입, 익금(손금)불산입이 그것이다.

다. 세율

일본의 법인세율은 1998년 개정에서 경제사회의 변화와 경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고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투명성이 높은 법인세제를 구축하기 위해 종전 37.5%에서 34.5%로 인하되었다. 1988년 이후 법인세율의 변화는 다음 <표 1>과 같다.

기업회계상의 결산이익과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자는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인 반면, 후자는 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기타 정책적 이유에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의 원칙에 대해 임시적·예외적 조치

로서 실시되고 있다. 법인세법의 특례는 과학기술의 진흥, 자원에너지 대책, 중소기업 등의 경영합리화·근대화, 산업기반의 강화, 지역개발의 촉진, 공해대책 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첫째, 법인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나 일정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둘째, 법인세의 과세이연으로서 특별상각, 준비금, 압축기장제도 등이다.

셋째, 세수증대효과를 가진 것으로서 토지양도차익추가과세제도, 접대비과세제도, 이전가격세제 및 tax haven세제 등이다.

첫째 및 둘째 유형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

<표 1> 일본의 법인세율

(단위 : %)

구분		1988년도 (전면개정 전)	1989년도 (경과조치)	1990년도 (전면개정 후)	1998년도 (법인세개혁 후)
보통법인	유보분	42	40	37.5	34.5
	배당분	32	35		
중소법인의 경감세율	유보분	30	29	28	25
	배당분	24	26		
협동조합 등	유보분	27	27	27	25
	배당분	22	25		
공익법인 등		27	27	27	25
특정의료법인					

는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담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에 의한 세수감소액의 법인세 수입에 대한 비율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마. 법인과 주주의 부담 조정

법인은 주주의 의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은 배당으로 주주에 귀속시킨다.

이와 같이 법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법인세의 성질 및 과세근거에 대해 2가지 사고방식이 생겨난다. 하나는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에 입각하여 법인은 독자적인 담세력을 가지며 개인과는 별도의 과세주체가 된다는 법인과세주체설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입각하여 법인은 개인주주의 집합체이고 법인세는 이들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는 주주집합체설이다.

일본 법인세법의 특례는 과학기술의 진흥, 자원에너지 대책, 중소기업 등의 경영합리화·근대화, 산업기반의 강화, 지역개발의 촉진, 공해대책 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법인세제도
는 1950년 샤프권고 이전에는 법인실재설에 의한 사고방식을 기초로 과세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샤프권고에서는 법인의 제설의 입장에서 법

인단계와 개인주주단계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해 개인주주단계에서는 배당공제제도, 법인주주단계에서는 법인간 배당 익금불산입제도가 실시되었다. 그후 1961년에는 법인소득 중 배당분에 대해서는 유보분보다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는 지불배당경감과세제도가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1988년 12월의 전면개정에서는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 배당경감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단계에서의 배당공제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도 일정한 모회사-자회사 사이의 배당을 제외하고 20%를 익금산입하는 제도로 개정되었다.

바. 교제비 과세제도

법인이 지출하는 교제비(접대비)는 기업회계상 그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해 손금산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 교제비과세제도는 1954년에 도입되어 강화되고 있다.

<표 2> 기업관련 조세감면액의 비중 (법인세 수입 대비)

(단위 : %)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비율	2.8	2.9	3.3	3.1	3.3	3.1	2.9	2.7	2.7	2.3

현재 교제비 손금 산입액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제도의 도입 당시 상황을 보면, 소득과세를 면하기 위해서

임원이나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유흥비, 교제비 등의 형식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임원, 종업원이 사적인 접대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사업관계자에 대해서도 사업상 필요를 넘어 접대하는 경향이 있어, 이 때문에 기업의 자본 축적이 저해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교제비 과세제도를 실시하여 가장급여(假裝給與)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이를 급여소득으로 파악하여 소득세 과세의 적정화를 도모함과 함께 교제비의 남용을 억제하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도입 당초의 제도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제비 지출상황 및 이에 대한 여론의

소득과세를 면하기 위해서 임원이나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유흥비, 교제비 등의 형식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임원, 종업원이 사적인 접대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사업관계자에 대해서도 사업상 필요를 넘어 접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도 일본기업의 교제비 지출상황과 손금불산입 비율을 보면, 영업수입 1,000엔당 교제비는 업종 평균 3.62엔이며, 교제비

지출액 중 손금불산입 비율은 56.0%로 나타나고 있다.

4. 상속·증여세

가. 기본적 구조

상속세는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취득재산의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부과되는 직접세이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근거는 상속에 의한 재산의 무상취득, 즉 우발적 원인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서 담세력을 찾아내어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유산을 취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부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여 그 분배를 도모하는 기능 외에도 피상속인이 생존중에 받은 세제상의 특혜나 조세회피 등에 의해 축적한 재산을 청산하는 즉,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의 현행 상속세 제도는 상속인 등이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취득과세방식을 기초로 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과세방식을 가미한 것이다. 즉, 상속세의 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 유산분할에 관계없이 유산총액

<표 3> 교제비 손금산입액

자본금의 규모	교제비 손금산입액
1,000만엔 이하	지출액 × 20%, 80만엔 한도
1,000만엔 ~ 5,000만엔	지출액 × 20%, 60만엔 한도
5,000만엔 초과	교제비 전액 손금불산입

반발로 인해 그후 손금불산입 비율이 점차로 인상되어 현재는 자본금 5,000만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전혀 인정되

및 법정상속인의 수
와 그 법정상속분이
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다. 나아가 각
자의 납부세액 산정
에 있어서는 상속세
의 총액을 실제 상
속비율에 따라 안분

한 산출세액에서 배우자의 세액경감 등 개인
적 사정을 고려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여세는 개인으로부터 사인증여
이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취득재산의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
세되는 직접세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
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상속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율의 누진도도 상속
세와 비교할 때 더 높다. 그러나 법인의 개인
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세가 과세된다.

나. 기초공제 및 과세상황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최저
한에 해당하는 유산에 관한 기초공제액은
5,000만엔 +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
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 중 과세피상속인의
비율은 1996년 현재 5.4%에 이르고 있다.
증여세의 기초공제액은 1975년 이후 계속해
서 60만엔으로 제한하고 있다.

5. 소비세

가. 기본적 구조

소비세는 법률상
특정 재화와 서비스
에 대해 과세하는 개
별소비세와 달리 소
비 일반에 대해 광범

위하게 부담을 지운다는 관점에서 금융거래,
자본거래, 의료, 복지, 교육 등 일부를 제외하
고 원칙적으로 모든 국내거래와 외국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5% 세율(지방소비세 포
함)로 과세되는 간접세이다.

소비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세액을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시켜 전
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다.

또한 생산, 유통의 각 단계에서 이중, 삼중
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소비세액에
서 매입소비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이 누적되
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기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역년(曆年),
법인은 사업연도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과
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또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있어서
확정소비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6개월, 9개
월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8만엔 초
과 4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외국 재화 수입의 경우에는 보세지역에서 인출한 때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자의 납세사무 부담을 배려한 조치로서 사업자면세점제도, 간이과세제도 등도 실시되고 있다.

나. 과세대상

소비세는 원칙적으로 국내의 모든 재화·서비스의 판매, 제공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내거래와의 세부담의 형평을 위해 수입거래에도 소비세가 과세된다.

국내거래의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한 자산 양도 즉, 사업으로 대가를 받고 행하는 자산 양도, 자산 대부 및 서비스 제공이다. 무상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개인사업자의 채고자산 등의 가사용소비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증여는 간주양도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수입거래의 과세대상은 보세지역에서 인출된 외국재화이고, 유상·무상거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 납세의무자

국내거래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하는 한, 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 일정한 사업규모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사무 부담이나 세무집행 측면을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사업자면세점제도). 즉, 기준기간(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법

인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매출이 3,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다. 면세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는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반면에, 과세매입소비세액 및 거래한 과세재화에 부과된 소비세액의 공제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출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선택신청서를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년간 계속하여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외국재화를 보세지역에서 인출하는 자이다. 따라서 사업자에 제한되지 않으며, 소비자인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라. 비과세거래

소비세는 원칙적으로 국내의 모든 재화, 서비스의 판매, 제공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소비세의 성격, 정책적 이유 등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소비세의 성격으로부터 비과세되는 것으로는 ① 토지의 양도 및 대부(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② 유가증권 및 지불수단의 양도 ③ 대부금 등의 이자, 신용보증 및 보

협료 등 ④ 우표, 인
 지 및 증지의 양도
 ⑤ 행정수수료 등,
 국제우편환, 외국환
 거래 등이다. 정책
 적 고려에서 비과세
 되는 것은 ⑥ 공적
 의료보장제도에 관
 한 요양, 의료, 시설요양 등 ⑦ 사회복지사업
 및 갱생보호를 하는 사업에서 행하는 자산양
 도 등 ⑧ 조산(助産)에 관한 자산의 양도 등
 ⑨ 일정 신체 장애자용 물품의 양도, 대부 등
 ⑩ 매장료 및 화장료를 대가로 하는 노무의
 제공 ⑪ 학교교육법상 각종 학교 및 직업훈련
 학교 등의 수업료, 입학금, 시설설비비 등에
 관한 노무의 제공 ⑫ 교과용 도서의 양도 ⑬
 주택의 대부 등이다.

마. 과세표준 및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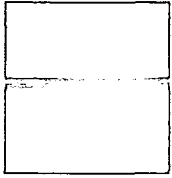
국내거래의 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이다. 소비세액은 포함하지 않
 으며 개별소비세액은 포함된다. 외국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액, 관세액의 합이 된다. 소비세 세율은 4%
 이지만, 소비세액의 25%인 지방소비세를 포
 함하면 부담률은 5%가 된다.

바. 간이과세제도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선
 택에 의해 매출소비세액을 기초로 하여 매입
 소비세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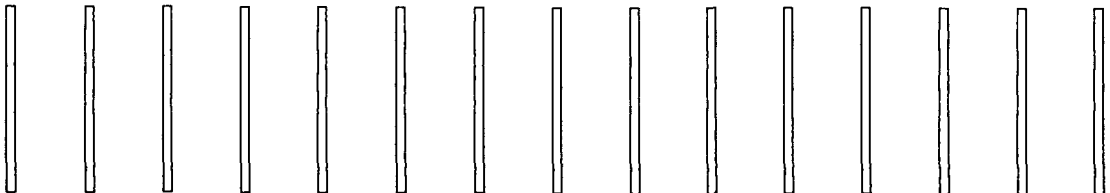
이 2억엔 이하인 사
 업자(면세사업자 제
 외)가 간이과세제도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
 기간부터 그 기간의
 매출소비세액에 간

주매입률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매입소비세액
 의 합계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 있다. 간
 주매입률은 도매업 90%, 소매업 80%, 제조
 업 등은 70%, 기타 60%, 서비스업 50%이
 다. 따라서 실제의 과세매입소비세액을 계산
 할 필요없이 과세매출만으로부터 납부할 소
 비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KIP**



정책흐름

1. 1999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 199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3.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안)
4.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1999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에서 1999년 3월 15일에 발표한 「1999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입니다.

<주요내용>

- 1998년 12월 전면개정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조문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보다 25% 정도 연장조정
 - 내대지 등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22%)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추가 등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임.

1. 감가상각제도 개편

<법·령 개정내용>

- 감가상각제도 통합·단순화
- 1994년 12월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 1월 이후 취득자산간 달리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감가상각제도를 통합·단순화
- 새로운 통합 내용연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가. 통합 내용연수 분류체계

현행		개정(안)
1994년 이전 취득자산	1995년 이후 취득자산	
○ 기계장치 외의 고정자산(274개) (2~60년)	○ 공동산, 건축물(3개) (4, 20, 40년) • ±25%	○ 1995년 이후 취득자산의 내용연수 분류체계로 통합
○ 기계장치(317개) (2~20년)	○ 업종별 자산(5개) (4, 6, 8, 10, 16년) • ±25%	
○ 우마과수(24개) (3~35년)	○ 시험연구용자산(2개) (3, 5년)	
○ 무형고정자산(19개) (5~50년)	○ 무형고정자산(4개) (5, 10, 20, 50년)	

<개정이유>

- 내용연수체계를 1995년 1월 이후 취득자산의 분류체제로 통합하여 간소화

나. 통합 내용연수

- 업종별 자산(기계장치 등) : 25% 연장

구분	현행	개정(안)
	기존내용연수 (하한 - 상한)	· 25%연장 ·
1. 석탄광업, 제조(출판·인쇄 등), 건설, 금융·보험 등	4년 (3~5년)	5년 (4~6년)
2. 제조(의복, 화학제품 등), 음식·숙박, 통신업 등	6년 (4~8년)	8년 (6~10년)
3. 금속광업, 제조(음식료, 섬유, 가죽, 종이, 고무, 금속, 기계장비, 자동차 등)	8년 (6~10년)	10년 (8~12년)
4. 담배제조, 수상·항공운송	10년 (7~13년)	12년 (9~15년)
5. 전기·가스·수도	16년 (12~20년)	20년 (15~25년)

<개정이유>

- 감가상각제도 통합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전반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적정화하고, 세수효과 등을 감안
 - 1994년 12월 이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10%) 폐지, 내용연수 단축 등
 - 최근 자산재평가 실시로 감가상각비가 급증
- 현행 내용연수가 실제 내구연수보다 짧다는 의견이 많

이 제기되고, 외국(최장 : 미국 20년, 일본 25년)에 비해서도 짧은 수준

- 내용연수 연장시에도 기업이 ±25%(지방국세청장 승인시 ±50%) 범위 내에서 선택적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업이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공통자산, 임대자산 등

현행		개정(안)
1994년 이전 취득자산	1995년 이후 취득자산	
○ 공통자산(144개) :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2~20년)	○ 공통자산 - 감가상각비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구성시 : 4년(3~5년) -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 구성시 : 4~16년(3~20년)	○ 공통자산의 내용연수 단일화 - 5년(4~6년)으로 단일화
○ 임대용 자산 : 개별자산의 용도별 내용연수(2~20년)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임대용 자산 - 임차자업종의 내용연수(3~20년) 적용	○ 임대용자산의 내용연수 단일화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4~6년) 적용

<개정이유>

- 공통자산의 내용연수를 통일하여 감가상각제도 간소화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되, 업종별 자산과 같이 25% 연장
-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내용연수가 다른 여러 업종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감안



○ 리스회사 리스자산

→ 판정유예기간, 부득이한 사유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현행	개정(안)
○ 금융리스(리스이용자 감가상각) 구분기준 -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등 -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기준내 용연수(임차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신 설)	○ 금융리스 구분범위 확대 - 작동 -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기준내 용연수(임차자 기준)의 75% 이상인 경우 -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 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당해 리스자산시가의 90% 이상인 경우

가. 업무무관 자산 판정유예기간

현행	개정(안)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 원칙 : 1년 - 니대지 : 2년 - 건설업법인 등의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 : 2년 - 주택신축판매용토지,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지, 공장용 부지 등 : 5년(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 초과시 계획기간)	○ 업무무관자산 판정유예기간 - (작동) - 3년으로 연장 - 3년으로 연장 - (작동)

〈개정이유〉

〈개정이유〉

- 1998년 7월 23일 개정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일치
- 동 준칙 개정으로 운용리스가 대부분 금융리스로 전환

- IMF지원체제 이후 기업의 자금난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에 착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확대

-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 감가상각분부터 적용
* 리스자산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 신규 리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유예기간내 업무에 미사용시 취득시점에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 ○ 다만, 다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 -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 - 경매·공매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경매 후 2년 미경과 - 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 기타 채권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년 미경과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사업완료로 인한 건축가능일부터 2년 미경과 (신 설)	○ 부득이한 사유 확대 - 3년으로 연장 - 3년으로 연장 - 3년으로 연장 - 성업공사에 매각위험한 부동산 중 3회 이상 유찰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1995년 1월 이후 취득자산의 내용연수 유지

2.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개선

〈법·령 개정내용〉

-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를 「업무무관 자산제도」로 전환
- 면적, 수입금액, 주업, 시설기준 등 세부판정기준 폐지
• 「판정 유예기간」만 존치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

<개정이유>

○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 매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증권투자회사 추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다만, 다음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농·수·축협,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유동화전문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창투사, 새마을금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다음 법인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개정이유>

○ 회사형 투신에 대하여 계약형 투신과 동일하게 지원
- 금융기관 예치 등을 통한 자산운용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정기부금 손비인정대상에 금융감독원 출연금 추가

<개정이유>

○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한 법률상 출연인 점을 감안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장학·문화예술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부금 - 의료보험조합, 한국보훈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금융기관의 금융감독원 출연금

*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률상 금융감독원 재원조성 :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 출연금, 금융기관 분담금 등

<적용시기>

공포 후 출연분부터 적용

5. 기업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명확화

<법·령 개정내용>

○ 기업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신설

- 출자에 의해 공동사업 영위시 : 출자금액 비율
- 기타의 경우 : 매출액 비율(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비율 가능)
→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 공동 광고선전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 광고장소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생산제품의 종류(소비재, 중간재, 산업재)에 따라 광고의 탄력성이 다르므로 가중치 부여 허용

□ 공동 광고선전비 분담기준

현행	개정(안)
<p><신설></p>	<p>○ 국내·외 광고선전비 차등</p> <p>- 국내 : 국내 매출액비율</p> <p>* 최종소비비용 재화, 용역 공급기업 : 가중치부여 가능(2배 이내)</p> <p>- 국외 : 수출기업의 수출액비율(대행수출액 제외)</p> <p>○ 다음 법인은 분담배제 가능</p> <p>- 매출액점유비 1% 미만</p> <p>- 매출액 중 광고선전비 점유비 0.1% 미만</p> <p>- 직전연도말 현재 청산·기업집단 분리(매각)절차 개시 법인</p>

6. 합병시 구분경리방법 명확화

<법·령 개정내용>

- 합병시 소멸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허용
- 특수관계없는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 등 일정요건 충족시
- 구분경리를 전제로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안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
- 구분경리의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현행	개정(안)
<p>○ 일반적인 구분경리방법</p> <p>- 자산·부채 : 사업별 구분</p> <p>· 고정자산·부채 : 용도별</p> <p>· 당좌·투자자산 : 자금원천</p> <p>· 기타자산 및 잉여금 등 : 용도·발생원천, 기업회계</p> <p>- 익금·손금 : 사업별 구분</p> <p>* 공통손익은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비율 등으로 안분</p>	<p>○ 합병시 구분경리방법은 다음 중 선택 허용</p> <p>- 현행 일반적인 구분경리방법</p> <p>- 사업장별 구분경리방법</p> <p>· 사업장이 당초 소멸법인 소유인지 존속법인 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되</p> <p>· 신설사업장은 존속법인 소유</p> <p>· 통합사업장은 합병 전 매출액이 큰 사업장 소유로 간주</p> <p>→ 선택한 방법은 계속적용</p>

<개정이유>

- 은행 등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시 구분경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택허용

7. 지출증빙 수취 예외인정 사유

<법·령 개정내용>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신설
-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미수취시 증빙불비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2000년)
- 다만, 10만원 미만 거래, 읍·면지역 간이과세·과세특례자와의 거래 등은 예외인정
- 기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도 예외인정

□ 예외인정 사유

현행	개정(안)
<p><신설></p>	<p>○ 전화·방송 용역</p> <p>○ 사업 양수, 공매·경매·수용</p> <p>○ 국외 거래, 택시운송용역 등</p> <p>○ 다음 재화·용역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p> <p>- 부동산 임대용역, 임가공용역, 운송 용역</p> <p>* 간이과세·과특자에 한정</p> <p>-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화·용역</p>

<개정이유>

-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거래규모·횟수 등을 감안하여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객관적 증빙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예외인정

1998 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에서 1999년 3월 10일에 발표한 「1998 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의 전문입니다.

〈주요내용〉

-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999년 3월 10일 오전에 감사원의 신동진 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99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음.
-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한 회계연도 기간동안의 정부의 세입 및 세출내역을 회계별·기관별로 종합적으로 기록·정리한 정부회계장부로서, 이를 마감하는 의미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정부의 세입 및 세출실적이 확정되는 것을 뜻함.
- 마감결과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4조 6,413억원, 세출결산액이 73조 2,260억원으로 그 차액인 세잉여금은 1조 4,153억원이며, 이중 1999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 7,951억원을 차감하면 6,202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이는 세입이 예산액보다 2조 5,372억원이 적게 징수(-3.3%) 되었으나 세출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 전출금 미집행액 2조 1,958억원을 포함한 3조 1,574억원(예산 현액 대비 4.1%)이 불용되었기 때문임.

- 한편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22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7조 9,257억원, 세출결산액이 54조 2,324억원으로서 세잉여금은 3조 6,933억원이며, 이중 1999 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 4조 270억원을 차감하면 3,337억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음.
 - 이처럼 특별회계에서 결손이 발생한 것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양여세 등의 세수 부족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서 재원없이 1조 5,693억원을 1999 회계연도로 이월한 것이 주원인임.

1. 총세입 · 세출부 마감의 의의

- 총세입 · 세출부의 마감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 세출의 출납사무가 종료되어 국가의 세입 · 세출실적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
- 총세입 · 세출부가 마감되면 그때부터 정부결산서 작성이 시작
- * 총세입 · 세출부 : 한 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일체의 출납현황을 회계별 · 소관별로 수록한 정부의 출납장부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6조 제2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10일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기타 공무원의 참여하에 전년도의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함.

- 통신사업특별회계 등 4개 기업특별회계는 8,734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

〈 특별회계 결산총괄표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이월액	순잉여금
합 계	579,257	542,324	36,933	40,270	-3,337
기타특별회계	487,218	463,981	23,237	34,948	-11,711
기업특별회계	92,039	78,343	13,696	5,322	8,374

2. 마감에 따른 개산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 세입이 예산액보다 2조 5,372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나 세출에서 3조 1,574억원이 불용되어 6,202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

- 세입의 경우 조세수입은 예산액의 99.3%, 세외수입은 예산액의 96.8%가 징수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액의 98.8%가 징수
- 세출의 경우 재특회계 전출금 2조 1,958억원, 국방부(방위력개선사업 등) 3,863억원 등 총 3조 1,574억원(예산 현액의 4.1%)이 불용

〈 일반회계 결산총괄표 〉

(단위 : 억원)

세입 (A)	세출 (B)	세계잉여금 (C=A-B)	이월액 (D)	순잉여금 (E=C-D)
746,413	732,260	14,153	7,951	6,202

〈참고〉 19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개산결산 개요

1. 회계별 결산총괄표

가. 일반회계

(단위 : 억원)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세계잉여금 (C=A-B)	다음연도이월액 (D)	순잉여금 (E=C-D)
746,413	732,260	14,153	7,951	6,202

나. 특별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다음연도이월액	순잉여금
18개 기타특별회계	487,218	463,981	23,237	34,948	-11,711
재정용자특별회계	153,150	152,070	1,080	1,330	-250
17개 기타특별회계	334,068	311,911	22,157	33,618	-11,461
4개 기업특별회계	92,039	78,343	13,696	5,322	8,374
합계	579,257	542,324	36,933	40,270	-3,337

주 : 4개 기업특별회계 : 양곡관리,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특별회계임.

나. 특별회계

○ 세입이 예산액보다 5조 9,782억원이 적게 징수되고 세출에서 5조 6,445억원이 불용되어 3,337억원의 결손이 발생

- 재정용자특별회계 등 18개 기타특별회계는 1조 1,711억원의 결손이 발생

* 농특세, 양여세 등의 세수 결함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관련 회계에서 재원없이 1조 5,693억원을 이월처리한 것이 주원인임.

다. 잉여금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세입			
예산액(A)	755,829	589,110	1,344,939
결산액(B)	746,413	579,257	1,325,670
비율(B/A)	98.8	98.3	98.6
세출			
예산현액(D)	771,785	639,039	1,410,824
결산액(E)	732,260	542,324	1,274,584
비율(E/A)	96.9	92.1	94.8
비율(E/D)	94.9	84.9	90.3
세계잉여금(C=B-E)	14,153	36,933	51,086
다음연도이월액(F)	7,951	40,270	48,221
순잉여금(G=C-F)	6,202	-3,337	2,865

주 : 예산현액 = 예산액(A) + 전년도이월액 + 수입대체경비 및 차관물자대 초과승인액

라. 순잉여금 발생원인

일반회계 (6,202억원)	세입감소 (-2조 5,372억원)	조세수입 : -4,193억원 세외수입 : -2조 1,179억원
	세출비용액 (3조 1,574억원)	재정경채부 : 2조 2,626억원 (재특 전출금 잔액 2조 1,958억원 포함) 국방부 : 3,863억원 (방위력 개선사업 FMS자불유보자금등) 예산청 : 1,062억원 (정부 예비비 잔액 1,051억원 포함) 경찰청 : 851억원 (인건비 잔액 등) 보건복지부 : 500억원 (의료장비 구입비 등 잔액) 기타 46개 기관 : 2,672억원
특별회계 (-3,337억원)	세입감소 (-5조 9,782억원)	통신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세입증가 : 1조 536억원 재정용자특별회계 등 16개 특별 회계 세입감소 : -7조 318억원
	세출비용액 (5조 6,445억원)	재정용자특별회계 : 3조 2,812억원 (융자자금사유 미발생 등) 철도사업특별회계 : 5,078억원 (세수부족 등) 통신사업특별회계 : 4,310억원 (예비 집행잔액 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4,267억원 (예비 집행잔액 등)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17개 특별회계 : 9,978억원

2.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가. 세입내역

1) 세입총괄표

(단위 : 억원, %)

구분	1998예산액 (A)	1998결산액 (B)	증감(A,B)대비	
			차액(B-A)	B/A
조세수입	592,569	588,376	-4,193	99.3
내국세	472,326	484,962	12,636	102.7
관세	48,544	38,360	-10,184	79.0
방위세	-1	14	15	-
교통세	71,700	65,040	-6,660	90.7
세외수입	163,260	158,037	-5,223	96.8
경상이전수입	16,350	19,455	3,105	119.0
재산수입	11,681	11,929	248	102.1
국공채및차입금	12,500	2,647	-9,853	21.2
전입금및기타	117,829	97,993	-19,836	83.2
기타세외수입	4,900	6,043	1,143	123.3
전년도이월금	-	19,970	19,970	-
합계	755,829	746,413	-9,416	98.8

2) 예산액대비 조세수입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1998예산액 (A)	1998조세수입 (B)	비율	
			B/A	구성
1. 내국세	472,326	484,962	102.7	82.4
(직접세)	273,146	291,091	106.6	49.5
소득세	171,746	171,940	100.1	29.2
법인세	90,369	107,758	119.2	18.3
토지초과이득세	-	25	-	-
상속세	7,746	6,796	87.7	1.2
자산재평가세	3,285	4,572	139.2	0.8
[간접세]	199,180	193,871	97.3	32.9
부가가치세	164,342	157,068	95.6	26.7
특별소비세	20,115	22,115	109.9	3.8
증권거래세	1,878	2,425	129.1	0.4
인지세	3,043	3,035	99.7	0.5
기타내국세	9,802	9,228	94.1	1.6
2. 관세	48,544	38,360	79.0	6.5
3. 방위세	-1	14	-	-
4. 교통세	71,700	65,040	90.7	11.1
합계	592,569	588,376	99.3	100.0

※ 양여세 및 농특세관련 세목별 수납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1998년도		1997실적 (C)	B/A	B/C
	예산(A)	실적(B)			
1.지방양여세	28,644	27,416	25,802	95.7	106.3
토지초과이득세(50%)	-	25	-4	-	-
주세(100%)	19,425	18,145	17,898	93.4	101.4
전화세(100%)	9,219	9,219	7,886	100.0	116.9
과년도수입	-	27	22	-	122.7
2.지방교육양여세	52,638	52,031	53,985	98.8	96.4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분 포함)					
교육세(100%)	52,638	50,980	52,966	96.9	96.3
과년도수입	-	1,051	1,019	-	103.1
3.농어촌특별세	11,042	10,154	10,398	92.0	97.7
농어촌특별세(100%)	11,042	10,072	10,270	91.2	98.1
과년도수입	-	82	128	-	64.1
합계	92,324	89,601	90,185	97.1	99.4

3) 예산액대비 세외수입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1998년도		1997수납액 (C)	B/A	B/C
	예산액(A)	수납액(B)			
재산수입	11,681	11,929	4,568	102.1	261.1
경상이전수입	16,350	19,455	17,234	119.0	112.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866	3,927	2,887	137.0	136.0
수입대체경비	596	785	994	131.7	79.0
관유물 매각대	179	120	134	67.0	89.6
용자 회수금	376	383	303	101.9	126.4
국공채 및 차입금	12,500	2,647	5,607	21.2	47.2
차관수입	883	828	685	93.8	120.9
전년도 이월금	-	19,970	18,069	-	110.5
전입금 및 기타	117,829	97,993	18	83.2	-
합계	163,260	158,037	50,499	96.8	313.0

나. 세출내역

1)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구성비
1.방위비	143,755	150,426	141,619	94.1	19.3
2.교육비	120,564	122,387	121,310	99.1	16.6
3.사회개발	69,058	73,714	72,040	97.7	9.8
4.경제개발	203,113	223,950	221,909	99.1	30.3
5.일반행정	71,801	75,370	73,048	96.9	10.0
6.지방재정교부금	70,392	70,392	70,392	100.0	9.6
7.채무상환,예비비 등	77,146	55,546	31,942	57.5	4.4
합계	755,829	771,785	732,260	94.9	100.0

2) 성질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구성비
1.인건비	75,739	77,553	76,767	99.0	10.5
2.물건비	88,984	92,504	88,524	95.7	12.1
3.경상이전	284,200	292,241	290,991	99.6	39.8
4.자본지출	72,966	88,781	79,440	89.5	10.8
5.용자·출자	18,346	18,400	18,400	100.0	2.5
6.보전재원	1,022	1,037	1,037	100.0	0.1
7.정부내부지출	185,767	195,958	172,840	88.2	23.6
8.예비비 및 기타	28,805	5,311	4,261	80.2	0.6
합계	755,829	771,785	732,260	94.9	100.0

3.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단위 : 억원, %)

회 계 별	예산액 (A)	세 입		세 출		세계잉여금 (B-C)
		금액(B)	B/A	금액(C)	C/A	
재정용자	183,588	153,150	83.4	152,070	82.8	1,080
국유재산관리	11,431	11,017	96.4	9,896	86.6	1,121
농어촌구조개선	56,622	53,995	95.4	52,823	93.3	1,172
농어촌특별세	12,900	12,766	99.0	12,022	93.2	744
교통시설	103,340	113,045	109.4	105,708	102.3	7,337
등기	1,484	1,471	99.1	1,277	86.1	194
지방방여금관리	28,627	32,096	112.1	29,457	102.9	2,639
교도작업	360	350	97.2	246	68.3	104
군인연금	9,951	9,428	94.7	9,342	93.9	86
지방교육용어금	45,769	54,229	118.5	48,201	105.3	6,028
에너지 및 자원사업	24,389	21,571	88.4	20,523	84.1	1,048
환경개선	8,776	9,196	104.8	8,847	100.8	349
국립의료원	519	482	92.9	466	89.8	16
토지관리 및 지역	4,053	3,451	85.1	2,803	69.2	648
채신보험	1,810	1,813	100.2	1,752	96.8	61
자동차교통관리	970	920	94.8	738	76.1	182
특허관리	968	1,238	127.9	811	83.8	427
교육환경개선	7,000	7,000	100.0	7,000	100.0	-
소계	502,557	487,218	96.9	463,982	92.3	23,236
양곡관리	12,837	9,205	71.7	12,837	100.0	-3,632
철도사업	38,563	36,809	95.5	33,576	87.1	3,233
통신사업	33,857	44,262	130.7	30,730	90.8	13,532
조달	1,296	1,763	136.0	1,199	92.5	564
소계	86,553	92,039	106.3	78,342	90.5	13,697
합계	589,110	579,257	98.3	542,324	92.1	36,933

<참 고>

1. 전년대비 1998 회계연도 세입·세출실적 비교

가. 세 입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예 산 액	1997	667,064	506,922	1,173,986
	1998	755,829	589,110	1,344,939
	전년대비	113.3	116.2	114.6
징수결정액	1997	750,530	518,424	1,268,954
	1998	860,332	586,315	1,446,647
	전년대비	114.6	113.1	114.0
수납액 (세입결산액)	1997	659,591	511,623	1,171,214
	1998	746,413	579,257	1,325,670
	전년대비	113.2	113.2	113.2
불납결손액	1997	32,848	42	32,890
	1998	47,602	29	47,631
	전년대비	144.9	69.0	144.8
미수납액	1997	58,091	6,759	64,850
	1998	66,317	7,029	73,346
	전년대비	114.2	104.0	113.1

나. 세 출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예 산 액	1997	667,064	506,922	1,173,986
	1998	755,829	589,110	1,344,939
	전년대비	113.3	116.2	114.6
예산현액	1997	677,967	537,189	1,215,156
	1998	771,785	639,039	1,410,824
	전년대비	113.8	119.0	116.1
지출액 (세출결산액)	1997	639,621	465,674	1,105,295
	1998	732,260	542,324	1,274,584
	전년대비	114.5	116.5	115.3
이월액	1997	15,823	43,347	59,170
	1998	7,951	40,270	48,221
	전년대비	50.2	92.9	81.5
불용액	1997	22,523	28,168	50,691
	1998	31,574	56,445	88,019
	전년대비	140.2	200.4	173.6



2. 전년대비 1998 회계연도 세입실적 비교

가. 조세수입

(단위 : 억원)

구분	1998예산액(A)	1998수납액(B)	비율		1997수납액(C)	비율	
			B/A	구성		B/C	구성
1. 내국세	472,326	484,962 (27,416)	102.7	82.4	495,730 (25,802)	97.8 (106.3)	81.4
가. 직접세	273,146	291,091 (25)	106.6	49.5	256,206 (-4)	113.6 (-)	42.1
소득세	171,746	171,940	100.1	29.2	148,679	115.6	24.4
(신고분)	40,923	40,068	97.9	6.8	50,221	79.8	8.2
(원천분)	130,823	131,872	100.8	22.4	98,458	133.9	16.2
법인세	90,369	107,758	119.2	18.3	94,247	114.3	15.5
토지초과세	-	25 (25)	-	-	4 (-4)	625.0 (-)	-
상속세	7,746	6,796	87.7	1.2	11,612	58.5	1.9
(상속세)	3,606	3,095	85.8	0.6	6,047	51.2	1.0
(증여세)	4,140	3,701	89.4	0.6	5,565	66.5	0.9
자산재평가세	3,285	4,572	139.2	0.8	1,672	273.4	0.3
나. 간접세	186,335	181,608 (27,364)	97.5	30.8	227,863 (25,784)	79.7 (106.1)	37.4
부가가치세	164,342	157,068	95.6	26.7	194,880	80.6	32.0
특별소비세	20,115	22,115	109.9	3.8	30,364	72.8	5.0
주세	-	-	-	-	-	-	-
전화세	-	(18,145)	-	-	(17,898)	(101.4)	-
증권거래세	1,878	(9,219)	-	-	(7,886)	(116.9)	-
다. 인지세	3,043	2,425	129.1	0.4	2,619	92.6	0.4
라. 기타내국세	9,802	3,035	99.7	0.5	3,901	77.8	0.6
		9,228	94.1	1.6	7,760	118.9	1.3
		(27)	(27)		(22)	(122.7)	
2. 관세	48,544	38,360	79.0	6.5	57,976	66.2	9.5
3. 방위세	-1	14	-	-	-85	-	-
내국세분	-1	8	-	-	-39	-	-
과년도분	-	6	-	-	-46	-	-
4. 교통세	71,700	65,040	90.7	11.1	55,471	117.3	9.1
5. 교육세	-	-	-	-	-	-	-
		(52,031)	-	-	(53,985)	(96.4)	-
교육세	-	-	-	-	-	-	-
		(50,980)	-	-	(52,966)	(96.3)	-
과년도분	-	-	-	-	-	-	-
		(1,051)	-	-	(1,019)	(103.1)	-
6. 농어촌특별세	-	-	-	-	-	-	-
		(10,154)	-	-	(10,398)	(97.7)	-
농어촌특별세	-	-	-	-	-	-	-
		(10,072)	-	-	(10,270)	(98.1)	-
과년도분	-	-	-	-	-	-	-
		(82)	-	-	(128)	(64.1)	-
합계	592,569	588,376 (89,601)	99.3	100.0	609,092 (90,185)	96.6 (99.4)	100.0

주 : () 내 금액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체된 금액임.

나. 세외수입

(단위 : 억원, %)

구분	1998년도		1997수납액 (C)	B/A	B/C
	예산액(A)	수납액(B)			
재산수입	11,681	11,929	4,568	102.1	261.1
경상이전수입	16,350	19,455	17,234	119.0	112.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866	3,927	2,887	137.0	136.0
수입대체경비	596	785	994	131.7	79.0
관유물 매각대	179	120	134	67.0	89.6
용자 회수금	376	383	303	101.9	126.4
국공채 및 차입금	12,500	2,647	5,607	21.2	47.2
차관수입	883	828	685	93.8	120.9
전년도 이월금	-	19,970	18,069	-	110.5
전입금 및 기타	117,829	97,993	18	83.2	-
합계	163,260	158,037	50,499	96.8	313.0

3. 전년대비 1998 회계연도 집행실적 비교

가.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1998년도				1997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1. 방위비	143,755	150,426	141,619	94.1	19.3	136,532	21.3	
2. 교육비	120,564	122,387	121,310	99.1	16.6	120,679	18.9	
3. 사회개발	69,058	73,714	72,040	97.7	9.8	58,993	9.2	
4. 경제개발	203,113	223,950	221,909	99.1	30.3	162,814	25.5	
5. 일반행정	71,801	75,370	73,048	96.9	10.0	68,218	10.7	
6. 지방재정교부금	70,392	70,392	70,392	100.0	9.6	67,987	10.6	
7. 채무상환, 예비비등	77,146	55,546	31,942	57.5	4.4	24,398	3.8	
합계	755,829	771,785	732,260	94.9	100.0	639,621	100.0	

나. 일반회계 성질별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1998년도			비율		1997 지출액(C)	비율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B/A	구성비		B/C	구성비
1. 인건비	75,739	77,553	76,767	99.0	10.5	77,840	98.6	12.2
2. 물건비	88,984	92,504	88,524	95.7	12.1	82,704	107.0	12.9
3. 경상이전	284,200	292,241	290,991	99.6	39.8	263,171	110.6	41.1
4. 자본지출	72,966	88,781	79,440	89.5	10.8	81,525	97.4	12.8
5. 용자·출자	18,346	18,400	18,400	100.0	2.5	2,470	744.9	0.4
6. 보전재원	1,022	1,037	1,037	100.0	0.1	566	183.2	0.1
7. 점부내부지출	185,767	195,958	172,840	88.2	23.6	127,262	135.8	19.9
8. 예비비및기타	28,805	5,311	4,261	80.2	0.6	4,083	104.4	0.6
합계	755,829	771,785	732,260	94.9	100.0	639,621	114.5	100.0

4. 연도별 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및 처리현황

가. 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세입(A)	세출(B)	세계잉여금 (C = A - B)	다음연도 이월액(D)	순잉여금 (C - D)
1996	일반회계	602,758	584,808	17,950	10,763	7,187
	특별회계	482,511	435,590	46,921	29,803	17,118
1997	일반회계	659,591	639,621	19,970	15,823	4,147
	특별회계	511,623	465,674	45,949	43,347	2,602
1998	일반회계	746,413	732,260	14,153	7,951	6,202
	특별회계	579,257	542,324	36,933	40,270	-3,337

나. 일반회계 순잉여금 처리내역

(단위 : 억원)

1996 회계연도	1997 회계연도
▲ 채무상환 : -	▲ 채무상환 : -
▲ 추가경정 예산편성 : 7,187	▲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 4,147
합 계 : 7,187	합 계 : 4,147

다. 특별회계 순잉여금 처리내역

(단위 : 억원)

1996 회계연도	1997 회계연도
▲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 17,091	▲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 2,470
▲ 기금에 적립 : 27	▲ 기금에 적립 : 132
합 계 : 17,118	합 계 : 2,602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안)

※ 이 자료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1999년 3월 26일에 발표한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안)」의 전문입니다.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 지난해 심각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상황을 반영
 - 어려웠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표준소득률을 대체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에서 검토
 - 금년에는 300여 종목에 대한 표본조사결과를 토대로 예년 보다 조정종목수를 대폭 확대
-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경영어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부녀자 부업소득관련 영세업종과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 건설업, 자동차관련업종 및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율수준을 인하
- 상대적 호황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상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지난해에도 상대적 호황을 누린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 등과 과세양성화가 미흡하고 실소득 수준에 비하여 표준소득률이 낮은 업종의 율수준을 인상

-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분류체계를 대폭 개편
 - 표준소득률에 대한 현실적합성과 적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사업종을 통합(999종목 → 900종목)
 - 그동안 표준소득률 적용에 혼선이 있던 종목과 신종업종 등에 적용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제점을 보완

2. 표준소득률 율수준 조정원칙

- (율수준 조정기준)
-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 등 각종 분석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요인을 서면분석
 - 표본조사종목 선정 등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표본조사를 통해 종목별 실소득률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율수준을 조정
 - 종목별 표본조사 결과와 각계의 건의사항을 중점검토하고 국민경제를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울수준 조정폭]

-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pm 5 \sim \pm 10\%$ 범위 내에서 조정
- 실소득 수준에 비하여 울수준이 현저히 낮은 종목은 실효성을 고려하여 20~30% 범위로 조정

[조정내용 총괄]

전체 종목수		울수준 조정 종목수			
현행	조정	계	인하	인상	신설
999	900	222	148	66	8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Δ%)
· 구멍가게	522079	7.2	6.9	5
· 신발 및 의복수선	526002	10.8	10.2	5
· 간이음식점	552109	11.1	10.5	5
· 개인택시	602201	12.5	11.9	5
· 모범택시	602203	21.2	20.1	5
· 용달차	602307	10.8	10.4	5
· 비디오대여	713001	33.0	31.5	5
· 서적·만화대여	713001	33.0	31.5	5
· 가사서비스업	950000	27.7	26.3	5
· 화장품외판원	940908	33.0	30.0	10
· 기타외판원	940908	33.0	30.0	10

■ 농·축·수산업관련 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 전반적 인하

-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 극심한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축산업 관련종목 및 유가상승에 따른 출어비용 증가, 엘니뇨·라니뇨 등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관련종목에 대해 울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Δ%)
· 낙농,육우사육	012101	4.2	4.0	5
· 양돈	012201	5.5	5.2	5
· 산란계,육계	012202	5.5	5.2	5
· 양봉,양잠,기타가금사육	012203	8.3	7.9	5
· 낙농품 제조업	152001	5.7	5.4	5
· 연유등 기타유제품	152002	11.4	10.3	10
· 저인망	051101	4.3	4.1	5
· 통발어업	051102	3.9	3.7	5
· 트롤	051103	5.1	4.8	5
· 안강망,선망,선인망	051104	4.9	4.7	5
· 채낚기,잡수기	051104	4.9	4.7	5
· 기타 해면어업	051104	4.9	4.7	5
· 내수면 양식	052103	10.4	9.9	5

3. 울수준 인하내용

■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 전반적 인하

- 수혜자 52만명
- 구멍가게, 택시, 용달차, 화장품외판원 등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지난해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나 부녀자들이 신규창업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 이들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간이음식점, 신발 및 의복수선업, 비디오·만화·서적 대여 등의 울수준을 인하

■ 부동산 경기심체로 어려움이 큰 건설관련업종을 세정지원

○ 지난해 IMF 한파로 타격이 큰 건설관련업종의 소득률 감소를 반영하여 건설관련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하하여 세정지원

- 특히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고금리·자금난으로 부동산세가 급증한 영세전문건설업에 대한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 일반건축공사	451000	9.3	8.8	5
· 일반토목공사	452000	10.4	9.9	5
· 준설공사	453200	10.4	9.9	5
· 포장공사	453300	10.4	9.9	5
· 배관·난방공사	454101	8.3	7.9	5
· 전기공사	454101	8.3	7.9	5
· 상하수도설비공사	454102	11.5	11.0	5
· 석공사·미장공사	454103	7.8	7.5	5
· 토공사	454203	7.8	7.5	5
· 구조물해체공사	454301	8.2	7.8	5
· 조적공사	454302	7.8	7.5	5

■ 산업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관련업종 인하

○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작업단축, 노사분규, 부도·휴폐업 등 어려움이 큰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내수판매량이 급감한 자동차판매관련 업종의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 유가상승으로 차량운용비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운송물량 감소를 반영하여 화물운송업의 율수준을 인하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 자동차제조업	341002	11.0	10.4	5
· 자동차부품제조업	343000	10.9	10.4	5
· 자동차소매	501201	11.9	11.3	5
· 자동차중개	501301	38.5	36.5	5
· 자동차판매대리	501302	31.0	29.5	5
· 자동차용품소매	503004	16.6	15.7	5
· 화물차운송(6톤미만)	602301	8.8	8.4	5
· 화물차운송(6톤이상)	602302	10.4	9.9	5
· 덤프트럭(12톤미만)	602303	13.2	12.5	5
· 덤프트럭(12톤이상)	602304	23.1	22.0	5
· 트레일러	602305	10.4	9.9	5
· 내항화물운송	611002	13.2	12.5	5

■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업종 율수준 인하

○ 지난해의 전반적인 실물경기 침체,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자금난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업을 지원하기 위해

-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44개 종목에 대해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하여 업계의 자구노력을 지원

종목명		현행	조정안	조정폭(△%)
· 식료품제조	(4개종목)	7.4~9.3	6.7~8.9	5~10
· 섬유공업제품	(3개종목)	7.6~9.6	6.8~9.2	5~10
· 나무·종이관련제품	(7개종목)	6.7~13.0	6.3~12.3	5~10
· 화학공업제품등	(6개종목)	8.5~21.8	8.0~20.7	5~10
· 비금속광물제품	(4개종목)	9.0~11.5	8.1~10.5	5~10
· 1차금속제품	(3개종목)	9.5~10.4	9.0~9.4	5~10
· 조립금속제품	(5개종목)	9.3~15.2	8.8~13.7	5~10
· 기계 및 장비제품	(6개종목)	9.0~12.8	8.5~11.4	5~10
· 전기기계제품	(3개종목)	10.4~11.9	9.4~11.3	5~10
· 운송장비제조	(3개종목)	5.3~7.1	5.0~6.8	5

■ 기타 율수준 인하요인이 있는 14개 종목에 대해 하향 조정

○ 표본조사 결과 및 동업자단체의 건의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현황에 비추어 현행 표준소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 종목에 대하여 율수준을 인하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 표구제품제조	369503	17.0	16.0	5
· 정원수도매	512131	11.3	10.7	5
· 생화, 분재도매	512132	7.8	7.4	5
· 화장품 도매	513320	8.0	7.6	5
· 연, 주물 도매	514291	6.9	6.6	5
· 요업체품식기소매	523330	11.0	10.5	5
· 건축자재(하드보드)	523494	11.5	11.0	5
· 서적 및 신문 소매	523519	8.4	8.0	5
· 귀금속 소매	523922	28.6	27.1	5
· 레코드, 테이프 소매	523980	11.5	11.0	5
· 자동판매기운영	525910	18.0	17.1	5
· 농산물참고	630202	27.6	26.2	5
· 폐기물수집처리	900100	15.6	14.8	5
· 예술관련산업활동	921401	23.7	22.5	5

4. 율수준 인상내용

■ 실소득수준에 비추어 표준소득률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율수준 인상

○ 경기침체하에서도 상대적 호황을 누리거나 유사종목에 비해 율수준이 낮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의 표준소득률을 인상

- IMF체제 이후 법원의 경매, 가압류 신청사건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집행관, 법무사 등
- 의료기술의 발달 및 환경오염 등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부병과

○ 실직자나 취업준비생의 신규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용으로 호황을 누리는 일부 기술계열학원의 율수준을 상향 조정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 변리사	741104	37.4	39.3	5
· 법무사	741107	44.0	46.2	5
· 집행관	741108	44.0	46.2	5
· 기술사	742104	23.8	25.0	5
· 안과	851205	23.0	25.3	10
· 이비인후과	851206	20.3	22.3	10
· 치과의원	851211	30.1	33.1	10
· 컴퓨터학원	809002	15.9	17.5	10
· 이·미용,양재학원	809002	15.9	17.5	10

■ 최근 호황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인상

○ 생활패턴의 변화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청소년관련업종, 일부 소비서비스업종 및 업황, 영업형태, 신고수준, 무기장 추계신고인원비율 등에 비추어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 표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상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 중국음식	552102	17.0	18.7	10
· 프랜차이즈음식점	552107	20.2	22.2	10
· 일반다방	552303	15.9	17.5	10
· 노래방·비디오방	921903	36.0	37.8	5
· 고시원·독서실	923100	18.7	20.5	10
· 일반미용업	930203	17.2	18.9	10
· 대중탕	930902	13.2	14.5	10
· 온천탕	930903	22.0	25.3	*
· 사우너탕	930904	24.2	25.3	*
· 물품취급장비제조	291502	9.0	9.4	5
· 서적및인쇄물도매	513421	4.5	5.0	10
· 비료소매	523995	3.1	3.4	10
· 신문보급소	749908	3.1	3.4	10
· 가구수산업	526001	8.8	9.7	10

■ 현행 표준소득률이 실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종목에 대한
울수준 인상

- 현행 표준소득률이 실소득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세 부담이 아주 미미하거나 대부분 과세미달 수준인 업종의 울수준을 인상
-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울수준에 따른 실효성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사종목을 통합하여 적용상의 오류
와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종목통합 기준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으로 통합
- 신고인원이 10명 미만인 업종은 유사종목에 통·폐합

○ 통합에 따른 울수준은 종목별 사업자수, 수입금액 비중
및 표본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193개 종목을 86개 종목으로 통·폐합

〈업종분류체계 조정종목수〉

전체종목	조정안	통합종목	신설·분리종목
999	900	-107	8

※ 통합종목 예시

현행			조정안		
코드번호	세세분류	기본율	코드번호	세세분류	기본율
141002	석회석	7.2	141002	석회석	7.2
141005	규사	7.2		규사	

■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업종분류체계 조정

- 부동산매매업 업종분류기준 정비
-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소득률의 차이가 줄어든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의 분류체계를 현실징에 맞게 조정
- 토지보유기간을 5년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현행 3단계)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울수준을 10% 인하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연탄및무연탄제조	231002	1.8	2.2	20
· 곡물도매	512111	2.5	3.0	20
· 라면도매	512274	2.9	3.5	20
· 식용유도매	512283	2.5	3.0	20
· 지금도매	513933	2.9	3.5	20
· 식유류도매	514121	2.7	3.2	20
· 비료도매	514930	2.1	2.5	20
· 담배소매	522080	1.6	2.1	30
· 연탄소매	523611	2.1	2.5	20
· 우표·버스표소매	523984	1.7	2.2	30
· 인지소매	523985	0.4	0.6	*
· 농우소매	523991	2.1	2.5	20
· 국공채매매	671201	0.2	0.3	*
· 쌀·기타곡물(법정)	512112	1.0	1.2	20
· 생화(법정)	512133	2.7	3.2	20
· 과실(법정)	512214	2.3	2.7	20
· 채소(법정)	512215	2.7	3.2	20
· 고추·마늘(법정)	512216	3.4	4.1	20
· 생선(법정)	512234	2.5	3.0	20
· 냉동수산물(법정)	512235	2.3	2.7	20
· 기타수산물(법정)	512236	3.1	3.7	20
· 농·수산물중개(법정)	749923	17.6	21.1	20

5. 업종분류체계 개편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사종목 통합

- 과도한 종목세분에 따른 불합리를 시정하고 세정의 생산성

○ 연예인 업종 세분화

- 연예인은 활동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중점관리
-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 예술부문 활동종사자는 10% 인하

음악가 및 연예인 { 배우, 탤런트, 개그맨, MC 등(35.5%)
 가수(35.5%)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31.9%)

○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관련 서비스업 분류기준 명시

-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정비

구분	종목	적용종목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특수소매업의 통신판매업 적용 (525100, 13.8%)
	온라인 정보제공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코드 신설 (724000, 34.6%)
기타인터넷 관련서비스	인터넷 게임방	오락관련서비스업의 전자오락실 적용 (921902, 44.0%)
	기타 인터넷 관련 서비스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적용 (729000, 35.6%)

■ 신종 업종 신설 및 분류기준 명시

○ 파이낸스업 적용기준 명시 : 29.7%

-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권에 공백이 생김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파이낸스업을 기타금융업(659900)의 적용 범위에 명시

○ 연구·개발업 신설 : 22.0%

- 대학교수 등이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표준소득률 코드 신설(730000)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신설 : 25.4%

-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고가의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809011)을 일반자동차학원(23.1%)에서 분리

○ 자동사진촬영기운영업 : 25.4%

- 청소년층에 선풍적인 인기로 호황을 누리는 스티커사진 촬영기 운영업으로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에 코드를 신설(749401)

○ 기타 신설·분리종목

- 전화방 : 924904, 39.5%
- 폐차처리업 : 900300, 15.6%
- 저작권 등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업 : 749934, 26.4%

○ 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신종산업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비

- 캐릭터대여업(산업재산권중개 및 임차서비스업 적용, 26.4%)
- 데이터베이스백업전문점(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적용, 35.6%)
- 대형할인점(종합소매업의 백화점 적용, 7.5%)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 이 자료는 예산청 법무담당관실에서 1999년 3월 29일에 발표한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 예산회계법 개정(1999.2.5)에 따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순차적인 예산반영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주요 개정내용>

- 이월가능 예산의 범위 확대
- 재해 구호·복구비의 개산 지출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및 순차적인 예산반영제도 도입
- 수입대체경비제도 확대
- 이월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도말의 무리한 예산 집행 방지
- 집행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월이 허용되는 범위에 협상에 의한 물품·용역계약을 추가
- 용지매입이나 어업권보상과 같이 보상협의, 감정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공사업 손실보상비의 이월제도를 새로이 마련
- 각 부처의 기본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도 5%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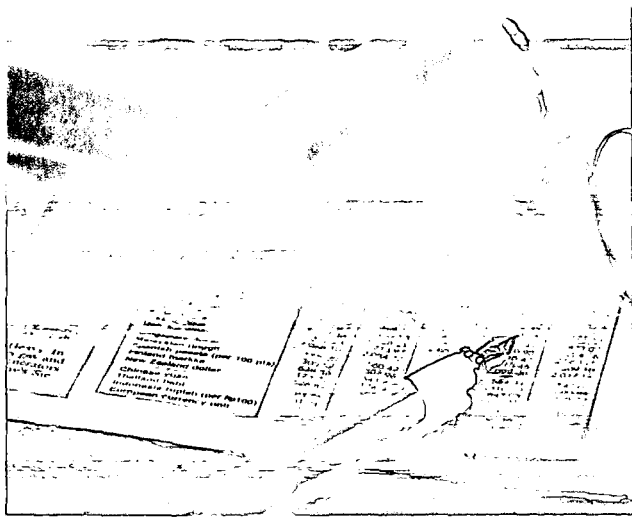
한도로 이월을 허용

- * 제도개선에 따라 1999 예산중 약 3,600억원 이상이 연도말의 무리한 집행없이 이월가능할 것으로 추정(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의 0.3%)
-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재해구호·복구비를 개산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
- 도로복구 등 재해구호·복구사업을 위한 계약의 대가는 개산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지출하고 사후에 정산
- 중앙에서 지원된 재해구호·복구비를 신속히 현장 투입(20일 이상 단축)
- * 재해대책예비비가 중앙에서 일선행정기관으로 배정되는 기간은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이미 20일 단축
- 이에 따라 재해종료 후 통상 105여일이나 지나 시작되던 재해복구사업이 65일 이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65일중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등에 소요되는 기간(약 50일)에 대한 국무조정실·행자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시 추가적인 기간 단축 전망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및 순차적인 예산반영제도를 도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예방

-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착수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
- 예산요구 및 편성도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하는 순차적 예산반영제도를 도입
 - 설계비와 공사비가 동시 반영되어 회계연도 내에 설계와 공사발주를 모두 마치기 위해 무리한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 공공개발·건설사업의 추진에 '선보상 후시공'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공기지연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유도
- 다만, '선보상 후시공' 원칙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담수물지 보상 및 간접어업권 보상,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고속국도 및 불가피한 경우에는 2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 1999 예산상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대상은 무안-광양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13건(총공사비 합계 약 19조원 이상)
-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공공부문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제고
 - 이제까지 역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한 경비로 제한되던 수입대체 경비의 범위를 시설제공 등으로 올린 수입까지 확대하여, 정부시설의 활용도를 제고(예 : 공무원교육기관 시설임대 등)
 - 또한 초과수입금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초과수입금 사용절차에 있어서도 예산청장의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사후통보제도로 전환하여 일선기관의 자율권을 보장
 - * 이에 따라 1999년 수입대체경비 전체수입은 1998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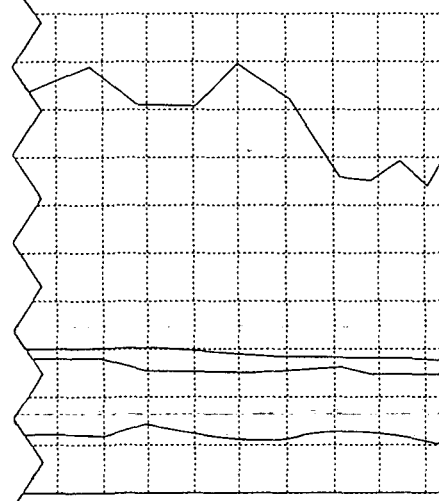
비 약 60억원(세입증가 20억원+초과수입금증가 40억원)이 증가한 약 81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

- 상기 예산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3월 25일(목) 차관회의의 결을 거쳐, 3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 후 4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임.



재정 통계

1. 공공부문 재정규모





1. 공공부문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공공부문	683,606	861,943	998,989	1,171,757	1,962,845	2,800,671	3,776,547	4,651,867	6,559,573
1. 중앙정부	468,666	548,481	746,135	721,289	1,202,936	1,765,281	2,518,799	3,274,442	4,408,047
일반회계	284,809	367,002	446,081	461,657	695,351	996,220	1,442,051	2,570,084	3,300,379
특별회계	158,592	168,715	230,493	195,259	341,030	524,387	690,091	273,886	346,095
기금	10,777	4,897	11,655	2,717	69,756	132,276	209,287	260,276	433,574
세입세출외	14,488	7,867	57,906	61,656	96,799	112,398	177,370	170,196	327,999
2. 비금융공기업	214,940	313,462	252,854	450,468	759,909	1,035,390	1,257,748	1,377,425	2,151,526
기업회계	107,281	139,082	185,126	209,815	307,574	446,018	611,215	703,058	939,495
기금	107,659	174,380	67,728	240,653	452,335	589,372	646,533	674,367	1,212,031
국민총생산(경상)	2,788,400	3,419,100	4,193,500	5,377,500	7,591,700	10,129,200	13,899,700	17,795,800	24,062,700
국민총생산대비									
공공부문	24.5	25.2	23.8	21.8	25.9	27.6	27.2	26.1	27.3
중앙정부	16.8	16.0	17.8	13.4	15.8	17.4	18.1	18.4	18.3

1999년 4월호
 122

1. 공공부문 재정규모(계속)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공공부문	8,669,335	11,331,490	15,011,469	15,546,872	16,092,418	17,704,790	18,926,093	17,190,398	18,622,102
1. 중앙정부	5,989,972	7,682,042	10,189,812	11,639,233	12,200,075	13,444,598	14,867,003	15,610,398	17,836,543
일반회계	4,707,099	5,967,816	7,228,482	8,552,447	9,526,305	10,335,368	11,488,887	12,701,800	14,383,992
특별회계	426,786	626,163	769,083	844,314	803,363	881,074	1,104,263	1,194,500	1,266,201
기금	600,747	713,428	1,525,115	1,575,255	1,309,095	1,593,220	1,400,674	1,239,098	1,452,409
세입세출외	255,340	374,635	667,132	667,217	561,312	634,936	873,179	475,000	733,941
2. 비금융공기업	2,679,363	3,649,448	4,821,657	3,907,639	3,892,343	4,260,192	4,059,090	1,580,000	785,559
기업회계	1,148,232	1,753,322	2,221,501	1,469,123	1,530,393	1,619,870	1,716,467	1,293,200	364,980
기금	1,531,131	1,896,126	2,600,156	2,438,516	2,361,950	2,640,322	2,342,623	286,800	420,579
국민총생산(경상)	30,872,100	36,857,000	45,702,900	52,460,500	62,086,000	71,044,600	79,301,100	92,909,300	109,726,500
국민총생산대비									
공공부문	28.1	30.7	32.8	29.6	25.9	24.9	23.9	18.5	17.0
중앙정부	19.4	20.8	22.3	22.2	19.7	18.9	18.7	16.8	16.3



1. 공공부문 재정규모(계속)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공공부문	21,458,257	26,206,519	34,035,371	41,508,001	45,469,557	50,734,907	60,356,681	71,578,725	84,429,270
1. 중앙정부	20,285,500	24,611,330	32,271,547	39,516,833	43,955,546	48,755,537	59,045,154	69,804,176	82,424,129
일반회계	16,199,958	18,851,776	22,821,998	26,098,307	28,742,198	31,782,417	34,422,740	38,818,843	44,808,889
특별회계	1,929,563	3,133,344	4,617,179	7,692,356	9,461,497	10,977,289	15,851,764	20,970,401	24,123,621
기금	1,797,335	2,262,183	4,103,877	5,228,758	5,240,854	5,807,532	8,195,618	8,969,322	13,048,888
세입세출외	358,644	364,027	728,493	497,412	510,997	188,299	575,032	1,045,610	442,731
2. 비금융공기업	1,172,757	1,595,189	1,763,824	1,991,168	1,514,011	1,979,370	1,311,527	1,774,549	2,005,141
기업회계	326,359	311,321	432,928	762,388	1,020,772	1,030,543	1,311,527	1,774,549	2,005,141
기금	846,398	1,283,868	1,330,896	1,228,780	493,239	948,827	-	-	-
국민총생산(경상)	131,371,300	147,941,600	178,262,100	214,239,900	238,704,600	265,517,900	303,772,600	348,979,300	386,438,200
국민총생산대비									
공공부문	16.3	17.7	19.1	19.4	19.0	19.1	19.9	20.5	21.8
중앙정부	15.4	16.6	18.1	18.4	18.4	18.4	19.4	20.0	21.3

주 : 1.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지출은 세출에서 제외함.
 자료 : 재무부, 『결산개요』, 1979, 1983, 1987, 1996.